규 정(제1집)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목 차

- ❖ 권두언 / 2
- ❖ 헌법시행세칙 / 7
- ❖ 총회규칙 / 43
- ❖ 총회임원전형규정 / 57
- ❖ 교단표준문서규정 / 65
- ❖ 부록 Ⅰ. 행정 양식 / 73
 - Ⅱ. 권징 양식 / 133

궈 두 언

모름지기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고 그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과 비전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그에 따른 시행규정, 그리고 소속된 국민이 지켜야 할여러 가지 규범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단이 세워지고 그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그에 따른 시행세칙 그리고 총회의 규칙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단이 분열의 고통을 겪으면서 교단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오던 차에 마침내 우리 교단이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주의신앙에 근거한 개정헌법을 완성하여 출간 한데 이어, 이번에 그 시행세칙과 총회규칙과 제규정을 집대성하여 규정집을 출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울러 일선에서 2년여의 산고 끝에 옥동자를 출산시킨 헌법위원장 및 헌법위원제위의 피땀 어린 헌신에 대하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그리고 이 사업을 완성함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하여 고견을 보내주신 실행위원들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교단산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헌법과 규범들을 제정해 놓아도 그 법을 국민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교단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 따른 신앙적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한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헌법과 시행세칙을 갖추고 또 총회규정을 세워놓아도 노회와 개체교회에서 이러한 헌법과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헌법, 죽은 규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개체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오랜 산고 끝에 마련된 헌법과 규정들을 잘 따르고 잘 지켜주어야 비로소 건강한 교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진다.

이제 우리 교단은 바른 신학과 바른 헌법, 그리고 바른 시행세칙을 근간으로 하는 총회규정이 세워졌으니 명실상부한 뼈대 있는 교단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 교단 산하의 노회와 개체교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소중한 보배들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의 위상을 세워나도록 기도와 협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0년 6 월 10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총회장 김 정 용목사

규정집 편찬에 붙여서

개정헌법이 확정되고 그 헌법의 시행세칙을 총회가 결의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집을 펴내지 못하고 지체되었음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금번에 규정집을 펴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이름을 [규정집]으로 붙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교단과 총회의 모든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해야 한다는 꿈을 담은 것임을 밝혀 둡니다.

앞으로 교단의 [규정집]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소속 노회들의 정관(규칙, 규정)을 비롯해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정관, 총회개혁공보 이사회정관,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정관, 총회부흥사회정관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비되고 세워져야하는 연합기관들의 규칙(장로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등)까지 모아 모아서 수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규정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기관, 및 소속 연합회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같은 원칙하에 일사불란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이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단 표준문서 규정에 따르는 서식과 양식들을 정리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각 노회는 물론 개체교회들까지라도 문서의 서식과 양식을 표준문서규정대로 작성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질서 있는 교단과총회의 행정사무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초판 규정집에 포함된 헌법시행세칙은 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속히 보완하여 나가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노회의 수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칙은 총회의합의에 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비를 통해서 번거롭게 하려하지 말고 헌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총회 규칙역시 전문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만 모양을 갖추어서 규정집을 출판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일에 헌신해 주신헌법위원회위원 여러분, 특별히 소위원들께 감사하며 규정집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교정을 담당해주신 이해동 목사와 편집을 책임져 주신 박만진 사무총장께 감사드립니다.

2020 년 6월 10일

헌법위원장 황호관목사



헌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헌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본 세칙에서 정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교단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말하며, 법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본 교단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 2. 적용순서는 교단헌법, 헌법시행세칙,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등의 순이 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고 동급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개체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 4. 헌법과 본 세칙(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본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소속 신학교 (신대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제2장 정 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개체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교회서식 제1, 2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할 교인들의 연명부를 첨부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개체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교회서식 제8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당회와 공동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합당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해당(該當)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개체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 1. 개체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 2. 해당교회에서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개체교회의 폐지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언한다.
-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0조 1항에 의해 기도처를 교회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근 다른 개체교회에 합병하도록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8장 4절) 군 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소속교회에 통고한다.

제9조 교인의 신급(信級)

교인의 신앙경력에 따라서 그 신급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에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니 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교인이다. 단,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고, 14세 이상이 되어 당회가 실시하는 입교문답에 합격하고 서약하면 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단, 헌법 정치 제75조 1항의 제한을 받는다.

2. 원입교인(願入敎人)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개체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3. 학습교인(學習敎人)

원입교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진리를 학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는 바를

고백한 자이니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교인이다.

4. 세례교인

학습교인이 당회가 실시하는 세례문답에 합격하여 서약하고 세례받은 교인이니 성찬 참여권이 있다.

제10조 교인의 이명

-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2. 헌법과 본 세칙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도 이와 같다.

제11조 타 교단 교인의 이명접수

타 교단으로부터 이적해 오고자하는 교인 및 직원의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다만 목사의 경우에는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해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제12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 1. 헌법 정치 제19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사무행정 표준서식으로 한다.
-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이명접수 통지서를 해당 교회에 보내야 한다.
- 3.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 했으나 2개월이 경과토록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 5. 이명에 관한 서식은 사무행정 표준서식, 노회 제15, 18, 19호(목사), 교회 제28호(준목, 목사후보생, 전도사), 노회 제16호, 17호에 의한다.

제13조 이명과 직원

-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 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 2. 항존직원의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 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원은 종전 교회의 무흠 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 기간을 합산한다.
- 4. 목사의 이명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14조 교인의 회복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 된다. 단,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1. 헌법 정치 제18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단,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6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 사직한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 2. 조기에 은퇴한 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에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년이 되는 생일까지 설교를 맡길수는 있다.
-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단, 증경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은 예외로 한다.
- 4.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

조직된 개체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정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교회를 떠나다른 교회로 이명할 수 없다. 단,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그 위임이 자동 해제된다.

2. 전임목사

교회의 조직여부와 상관없이 개체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니 위임목사나 임시목사가 아닌 모든 목사를 부르는 칭호이다. 전임목사로 7년을 경과 후 계속 시무코자 하면, 교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 임시목사

임시란 그 사역의 임시성(臨時性)을 말하는 것이요, 목사의 직이 임시라는 의미는 아니며, 교회의 조직여부와 상관없이 개체교회의 형편이나 청빙 받은 목사의 사정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기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기간은 1년이다. 단, 임기 만료 후 계속 시무코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4. 부목사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케 하며 그 시무를 계속케 하려면 매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담임목사 청빙을 받으려면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전도목사

노회가 청빙하고, 노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조직하여 육성하는 목사이다.

6. 교육목사

- 1) 당회장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체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 2) 노회의 파송을 받아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로 서 기관목사에 준한다.

7. 군종목사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군인들이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대(軍隊) 에 배속되어 시무하는 목사이다.

8. 기관목사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청빙한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니 교단산 하의 기관이나 교육, 언론, 방송, 문서, 병원, 경찰, 학교, 교도소, 기타 특수 기관에 서 사역하는 목사이다.

9. 음악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체교회나 교회음악 전문기관에서 교회음악과 찬양사역을 담당하여 보급하는 목사이다.

10. 선교사

- 1)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국에 파송을 받아 선교하는 목사이다.
- 2) 해외교포를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니 외지목사라고도 한다.

11.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정년 또는 기타사유로 시무사면(辭免)을 청원할 때 원로목사가 되며, 그 교회의 당회가 일정한 생활비를 작정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의한다.

12. 공로목사

동일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목사로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정년 또는 기타사유로 시무사면(辭免)을 청원할 때, 노회가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재석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하는 목사이다.

13. 무임목사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발언권(發言權)은 있으나 결의권(決議權)은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무임상태로 있으면 노회의 결의로 목사의 직무를 정직(停職)하고,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복직(復職)할 수 있다.

14. 은퇴목사

정년 또는 기타사유로 퇴임한 목사로 노회 회원권은 있으나 개체교회 치리권은 없다.

제18조 장로의 칭호

1.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시무장로가 정년 또는 기타사유로 은퇴하면 원로 장로로 추대하여 그 명예를 보존하고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2. 은퇴장로

장로가 연로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가 없을 때 사임하거나 또는 정년퇴임한 장로 이니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3. 무임(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던 자가 이명 와서 아직 취임 받지 못한 장로이니,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당회 언권회원과 제직회의 회원이 될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선출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가 된다.

4. 휴무(휴직)장로

장로가 연로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가 없을 때나,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태반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가 시무사면, 혹은 휴직과 사직을 허락한 자, 혹은 당회의 권고로 시무사면, 휴직 혹 사직한 자이니 이런 사실을 당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19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 1. 개체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교회서식 제10호~제12호, 노회서식 제1호, 2호에 의하여 청빙서 및 구비서류를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전임목사가 된다.
-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 할 수 있다.

제20조 전도목사 청빙

노회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대표(기관장, 이사장)의 청빙, 혹은 노회의 청빙에 의하여 파송할 수 있으며 노회서식 제6호~제9호 서식에 의한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무목사 청빙 승인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임사부에서 목사청빙 승인을 할 수 없다.

제22조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의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

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 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 2. 전항의 증빙서류는 교회서식 제27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임직 시한은 준목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은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 회시까지 유효하다.

제23조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미조직교회나 당 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31조 2항과 2호에 의거하여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출석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이러한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 회의록으로 당회 회의록을 대신한다.

제24조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노회 폐회 중 이라도 임사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은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 1.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 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교회서식 제10호).
-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관할하도록 한다.
-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 사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 102조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직무는 본 세칙 제26조에 준한다.

제26조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 1. 당회장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 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

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 기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3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정치 제102조 5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27조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조례 제79조(판결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최종판결확정시까지 노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제28조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 1. 헌법 권징조례 제40조에 의거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헌법 정치 제102조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2.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 3.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시무정지를 받은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 4.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담임목사는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 기간을 시무할 수 있다.
- 5. 전항의 경우 유기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반드시 연임 청원기간에 대리당회 장이 당회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 6. 전항의 경우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사임된 것으로 본다.
-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제29조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 1. 헌법 권징조례 제6조 1항에 의한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 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 (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 2.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시무가 정지, 해임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헌법 권징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정직책벌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동안 모든 시무가 일시정지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제31조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헌법 권징조례 제6조 1항 9호에 의거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의 경우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교회(기관), 소속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제32조 위임식

-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에는 담임목사라 하고,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서식 제3호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위임의 해임

개체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가 해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폐 당회가 되어 5년을 경과해도 당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되어 전임목사가 된다.
- 2. 본 세칙 제43조에 의하여 해임(해직)될 수 있다.
- 3. 현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치리회로부터 받은 처분에 의하여 해직될 수 있다.
- 4. 정당한 재판 없이 교인들의 담합이나 투표에 의한 위임목사 해직은 불가하다.

제34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 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회가 폐회한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7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무임목사 처리

- 1. 헌법 정치 제37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해직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 2. 목사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9조 (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제36조 기관목사

- 1. 교단 산하기관이나 다른 특수한 기관에 종사하는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없이 개체교회를 시무할 수 없다.
- 2. 기관목사의 청빙서식은 노회서식 제8호, 제9호에 의한다.

제37조 원로목사

- 1. 헌법 정치 제32조 2항의 원로목사는 당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와 동시에 원로목사가 되며, 예우에 관하여는 당회(=제직회)에서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집행한다. 단, 교회서식 제9호에 의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 2. 목사의 시무연한(始務年限)은 그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한 기간의 합산이다.
- 3. 원로목사 추대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38조 겪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임사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39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 1. 헌법 정치 제36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소속교회나 기관의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교회서식 제6호),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교회서식 제24호) 총회개혁신학연구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 3.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라도 교단직영신학교 혹은 인준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청빙할 수 있다.
 -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나성(LA) 혹은 뉴욕(NY)소제 직영신학교(M.Div)를 졸업한 목사는 본 교단직영신학원이나 인준신학교 에서 1년 이상 목회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다.
 - 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직영신학교 목회학석사과정(M. Div.)을 졸업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본 교단직영 지방신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개체교회(기관)에서 시무할 수 있고, 본 교단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준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4. 본 교단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교단 소속 개체교회나 기관의 청빙을 받으면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부부사역의 한계

1. 부부사역이라 함은 동일 당회의 목사 혹은 장로로 동역하는 경우이다.

- 2. 목사의 배우자를 동일 당회의 당회원(목사 혹은 장로)으로 시무케 함은 불가하다.
- 3. 부부가 동일한 교회의 장로로서 섬기는 일은 가하나 장로가 단 2인(부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 1. 목사의 전임 청원서는 노회서식 제18호에 의한다.
- 2. 목사의 사임은 노회서식 제10호, 제11호에 의한다. 단,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 3. 헌법 정치 제37조 1,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노회서식 제 11호)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42조 목사, 장로의 휴무

- 1. 헌법 정치 제38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하면 노회서식 제12호, 제13호에 의한 휴무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 4. 헌법 정치 제51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교회서식 제20호에 의한 청원서와 휴무원을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연장, 자동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 한다.

제43조 목사, 장로의 해임

- 1. 목사는 헌법 정치 제37조에 의거하여 권고사임이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총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노회에 해임을 청원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할 수 있다.
- 2. 장로가 헌법 정치 제50조에 의거한 권고사임이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회 재판국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한다. 단, 해임 부결될 경우 노회 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다.

제44조 직원 선택

- 1. 장로, 집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6조 3항의 경우(당회추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시행세칙 제44조 2항(세례교인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하지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 2. 장로의 수를 증원하고자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세례교인 15인 당 1인의 장로를 증원할 수 있다.
- 3. 당회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라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의 직원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 4. 장로는 선출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 5.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 서식 제19호에 의하여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6. 장로, 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 7.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 8.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6조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해임시킬 수 없다.
- 9.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본조2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10. 항존직원의 자격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 11.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 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2.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 13.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4. 권사의 연령을 40세 이상(헌법 정치 제57조), 서리집사는 30세 이상인 자(헌법 정치 제74조)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개체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그 연령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있다.

제45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 2. 헌법 정치 제26조에 말한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정치와 권징조례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무흠 기간은 항존직원으로 임직할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

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46조 목사후보생

- 1. 목사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시취)은 노회 임사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교 졸업 전에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임사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 2. 목사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 의 허락(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목사후보생의 이명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 1.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103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 2. 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당회 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 3.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 권징 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4.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투표권)은 없다.

제49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 1. 헌법 정치 제106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전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 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2.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회로부터 시작된다.
- 3.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미조직교회(=준 당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제50조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노회

헌법 정치 제109조 1항 단서 조항에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노회는 다음과 같다.

- 1. 특수한 지역노회로서 조직교회는 3개 처 이상이나 개체교회수가 미달하고, 노회의 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총대 수를 목사, 장로 각각 2인으로 한다.
- 2. 회원교회 일부가 다른 교단으로 이탈하였거나, 사고노회가 된 경우로서 해 노회의 소명과 실사를 거쳐 그 특수성을 인정받은 노회이다. 단, 실사는 정치부에서 담당하고,

목사, 장로 각각 1인의 총대를 파송하되 언권회원이 된다.

- 3. 특수한 노회로 인정되면 재정부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총회나 노회가 행정보류를 하였거나 사고노회는 특수한 노회가 아니다. 단, 사고노회는 노회자체내의 문제로 인하여 총회의 감독과 치리를 거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총대를 파송하지 않는 노회이다.

제51조 장로총대 선임기준

개체교회에서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의 선임기준 수를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 정할 수 있다.

- 1. 세례교인 50명 미만 까지 1인
- 2. 세례교인 50명 이상 150명 미만 까지 2인
- 3. 세례교인 150명 이상 250명 미만 까지 3인
- 4. 세례교인 25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4인
- 5. 세례교인 500명 이상의 경우 250명을 초가 할 때마다 1인씩 증원 할 수 있다.

제52조 노회의 분립, 합병

- 1. 헌법 정치 제118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노회서식 제4호, 제5호에 준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본 세칙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3조 노회의 영업

- 1. 다른 교단에 속한 노회를 본 교단으로 영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완비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노회조직 및 현황 보고서 1부
 - 2) 노회 소속 목사 회원 및 장로 명부(개인 별 주소 포함) 1부
 - 3) 대표자(=노회장)의 이력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4) 소속교단 탈퇴를 결의한 노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본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노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6) 교계신문에 공지한 교단 탈퇴공고 사본 1부
- 2. 조직교회 3개 처 이상, 개체교회는 15개 처 이상이어야 한다.
- 3. 총회 임원회에서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54조 교회 및 노회의 수습

-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단, 노회 폐회 중에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 및 파송할 수 없다.
-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판단으로 개체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103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4.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이미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의 권한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 6. 치리회의 사고여부는 노회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 7. 수습전권위원은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 8.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9.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밝혀진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 11.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단,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 1 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12.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판결 전까지이며 최종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 13. 판결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 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4.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 15.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헌법 정치 제102조 5항에 의거 수습전권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16.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본 세칙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17. 당회의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의 해제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

- 1. 헌법 정치 제133~136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 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 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파회 중에는 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단, 교단에서 는 이사를 3분의 1 이상 파송할 수 있다.

제56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全)노회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 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 2. "투표총수의 과반"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 3.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全)노회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 서의 가결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 4.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 5.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투표수(찬성, 반대, 무효, 기권)를 보고하는 것이다.
- 6.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파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하는 것이며 총회장은 그 결과에 따라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부결 선포 및 공고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7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1.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본 세칙, 총회규칙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의 제안 및 상정한다.
- 2. 헌법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총회 상비부장 혹은 상임(특별) 위원장, 노회장의 공문 (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 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 3. 재판계류 중이거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 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4.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 5.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

단이 헌법 권징조례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6. 헌법(헌법시행세칙 포함)과 총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 법위원회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7.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파회 중에는 실행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차 요구할 수 있다.
- 8.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9. 헌법위원을 공천할 때, 동일 노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파회 후 보선은 헌법위원장의 제청(提請)을 받아 총회임원회에서 한다. 단, 동일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각 1인은 공천할 수 있고, 모든 상임위원의 보선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 10.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나 전체 노회의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8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77조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파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지원 보류 포함)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조례

제59조 제착·기피·회피

- 1. 헌법 권징조례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

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 10. 제척 · 기피 ·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 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제60조 해명권 · 질문 요청권

- 1. 재판국장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 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 소송지휘권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발언을 허가 및 금지할 수 있다. 단, 발언의 금지는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제62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 1. 헌법 권징조례 제14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세 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 2. 심판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조례 제34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해당 치리회에 예납 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34조 2항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 1) 고소(고발) · 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금 오십 만원, 노회: 금 일백만원, 총회: 금 일백 오십 만원.

2)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3) 상고

총회 : 금 일백 오십 만원.

- 4) 이의(불복)신청·재심청구·특별재심청원·항고·재항고 당회: 금 오십 만원, 노회: 금 일백만원, 총회: 금 일백 오십 만원
- 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 1) 헌법 권징조례 제54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가주한 때
 - 2) 헌법 권징조례 제57조 2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 5.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 1) 헌법 권징조례 제58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한 때
 - 2) 헌법 권징조례 제55조 제4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한 때
 - 3) 헌법 권징조례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한 때
 - 4) 헌법 권징조례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한 때
 - 5) 헌법 권징조례 제14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 6)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 6. 항고 및 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권징조례 제72조 1항 후단 또는 제72조 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조례 제73조 1, 2항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 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 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

제64조 변호인 선임서

- 1. 헌법 권징조례 제36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 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65조 답변서 · 준비서면

- 1.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 재판국장은 10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서면의 제출이 없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기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기소의 취소로 보아 기소기각의 결정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의제자백으로 보고 판결을 하여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 3.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 재판서

헌법 권장조례 제39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장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장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67조 판결정정

- 1. 헌법 권징조례 제43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68조 재판조서

- 1. 헌법 권징조례 제45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1항,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4. 차회의 재판기일에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야 하고,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 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 그 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조례 제46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

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속기록·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소환

- 1. 헌법 권장조례 제37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장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1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된 어떤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72조 증언거부

-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 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3조 증인소환

-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선서의 절차

- 1.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조례 제51조 제4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75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 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6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8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 1. 헌법 권징조례 제58조 1항의 고발인은 증거가 있어야(제출해야) 고발할 수 있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55조와 제58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 3. 헌법 권징조례 제55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4.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 5. 헌법 권징조례 제54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인(고발인) 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9. 헌법 권징조례 제55조와 제58조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고발)의 취하가 있는 경우 헌법 권징조례 제54조에 의한 화해의 종용에 의한 화해신청으로 보고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00년 00월 00일자로 고소(고발)의 취하를 하였으니 화해로 간주하여 종료되었다"고 기재한다.
- 10. 전항의 경우 화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은 제7항 및 제8항과 같다.

제8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62조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헌법 권장조례 제8조 및 본 세칙 제59조의 제척, 기피, 회피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은 기소위원 1인에 한한다.

제82조 피의자 신문

- 1.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 전에 통지한다.
-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 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8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직영신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84조 기소제기의 방식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제기의 사실을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8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조례 제67조 2항 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조례 제68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7조 불기소처분

- 1.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 (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기소 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2) 혐의 없음
 - (1) 범죄인정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소권 없음
 - (1)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2)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 (3)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4)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 (5)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 (1)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 (3)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 (4)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 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6)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 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7)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 고발을 한 경우
-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 4.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 5.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 6.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제8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89조 기소장의 변경

- 1.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기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0조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91조 상소 서식

- 1. 헌법 권징조례 제103조에 의한 항소 및 상고의 취하서와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항소장, 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 및 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 2.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피항소인을 말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당회 기소위원장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되고 당회 기소위원장이 항소하면 피고인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된다.
-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중 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전항과 같다.

제92조 위탁재판의 청원

- 1.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 2. 재판의 전례가 없어서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 3.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직 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여야 한다.
- 4.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 1)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 2)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 3)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 5.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폐 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서 재판국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제93조 재심청구

- 1.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라 함은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136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조례 제138조에 의한 재심청구절차와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 4. 헌법 권징조례 제138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

- 다. 단,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 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 5.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 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재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 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조례 제98조의 부적법기각결정이유 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 재판국 원이 될 수 없다.
- 8. 전항의 경우 재심 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 9. 제7항의 경우 재심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 심 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 회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 10. 재심청구가 원심 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 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 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 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 11. 재심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12. 원심 재판국은 재심청구의 접수를 거절할 수 없고, 재심심판 등 재심에 관한 모든 판단은 재심 재판국이 한다.
-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 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14.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
- 15.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 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한 재 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원심 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 국을 말한다.

- 16.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17.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 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94조 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 구성 및 절차

- 1.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 개회 전날까지 하고, 서식은 권징 제10-2호로 한다.
- 2.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에 이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를 하여 야 하고 총회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답변서를 총회장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는 총회 본회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3. 총회장은 특별재심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총회 재판국의 구두 답변 및 재판에 관한 진술 과 총회특별재심청원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대리인)의 청원취지와 청원이유에 관한 구두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총회특별재심위원은 총회 본회의가 선임하되,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5. 피고인이 청원한 총회특별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6. 특별재심청원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총회특별재 심위원회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 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9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 1.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 2. 법리부서(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 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비부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 4.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고, 기소 의뢰를 받은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는 반 드시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하여야 한다.
- 5. 제2항,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 때까지의 관계기관 협 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제9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

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 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 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 하 판결을 한다.
-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97조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 1.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비부장과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장과 각 상비부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 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비부장, 각 상임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 다.
-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 · 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비부 장과 상임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장들(상비부서장 겸임 자제외)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 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 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 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 11. 제9항의 경우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98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 1.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 된 것으로 본다.
-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조례 제16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99조 행정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

- 1. 헌법 권징조례 제167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 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 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100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1. 헌법 권징조례 제168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16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01조 행정쟁송의 소제기 방식과 보정명령

- 1. 행정소송,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 확인의 소,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사 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 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3. 행정소송과 결의취소 등의 소송과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와 총 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 4.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나 총회 특별재심청 원을 할 수 없다.
- 5. 치리회장이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 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 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제102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 1.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 1.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104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 1.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 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3. 집행정지는 개체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제2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5.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5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 을 송달하여야 한다.
- 4.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제106조 준용규정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107조 집행과 종국판결

- 1.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장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 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범한다.
-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 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벌한다.
-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제10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 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9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 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에게 권장사유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 금 교단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장조례 제6조 3항 8호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

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다.

- 1)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는 처분
- 2)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비부서, 위원회, 정기 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 권, 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제110조 서식

- 1. 헌법이나 본 세칙에 의한 정치 및 권장의 모든 서식은 본 교단의 표준문서규정을 준용한다.
- 2. 표준서식과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거나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 3. 표준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헌법이나 본 세칙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본 세칙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 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18 년 9월 19일 공포 2020 년 4월 24일 실행위원회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제104회 총회장 김 정 용 목사 서 기 이 해 동 목사

헌법위원회

위원장 황호관목사 서 기 류정수목사 위 원 임종학목사 위 원 이해동목사 위 원 이영진장로 위 원 김헌윤장로

총 회 규 칙

총 회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칙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교단헌법에 명시된 교리의 보존과, 성경적 보수신앙을 수호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사역의 효과적 실행, 지속가능한 교단의 가치창출, 그리고 헌법에 규정한 총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 치

본회의 사무소는 교단 본부 내에 둔다.

제2장 총회의 총대

제4조 총대의 의의

총회의 회원은 각 노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고 총대라 칭한다. 단, 모든 회원은 정치 제14장 124조와 125조의 제한을 받는다.

제5조 총대 선출 기준

- 1. 목사총대는 총회개혁신학연구원 및 총회인준신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임직 후 10 년 이상, 장로는 임직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2. 개체교회의 담임(=전임) 목사와 시무장로이어야 한다. 단, 증경총회장과 증경장로부총회 장은 예외로 한다.
- 3. 장로총대는 동일당회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의무

- 1. 임원회가 정한 총대비를 예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 2. 소속노회의 상회비와 소속교회의 세례교인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단, 총대교회는 1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소속노회의 노회록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단, 6월말까지 정치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회무에 충실해야 하며 개회 중에 무단이탈 할 수 없다. 단, 이석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및 직무

- 1. 모든 총대는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퇴임한 자동총대는 발언권 만 갖는다.
- 2. 총대의 직무와 권리는 개회직전 서기의 호명으로 개시되며 파회와 동시에 그 직무와 권리는 종결된다. 단, 상비부와 위원회의 직능은 예외이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수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목사·장로 각 1인)
- 3. 서기 1인
- 4. 부서기 1인
- 5. 회의록 서기 1인
- 6. 회의록 부서기 1인
- 7. 회계 1인
- 8. 부회계 1인

제9조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 중 목사는 총회개혁신학연구원 및 총회인준신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전형기준은 임원전형규정으로 정한다.

- 1. 총회장 : 임직 20년 이상인 위임목사로서 부총회장을 역임한 자. 단, 교단간의 합동 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목사 부총회장 : 임직 20년 이상인 위임목사.
- 3. 장로 부총회장 : 임직 7년 이상인 시무장로.
- 4. 서기, 부서기 : 임직 15년 이상인 담임목사.
- 5. 회의록 서기, 회의록 부서기 : 임직 10년 이상인 담임목사.
- 6. 회계, 부회계 : 임직 5년 이상인 시무장로.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회 장 : 본회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파회 후에는 교단을 대표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 차순은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서기 순으로 한다.
- 3. 서 기: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 1) 본회의 개회 준비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2) 총회관련 모든 서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제반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송부한다.

- 3) 총대추천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4) 총회 개회 시에 회원을 호명하고,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하고,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의 신속을 기하고 회의절차를 인도한다.
- 5) 총회 파회 후 1 개월 이내에 총회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각 노회와 총대에게 우송한다.
- 6) 공천위원회의 임시의장이 되어 위원장을 선출한다.
-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회의록 서기 : 회의록을 작성보고하며, 총회 파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용된 모든 보고 서류를 서기에게 인도한다.
- 6. 회의록 부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회계 :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업무를 관장하고, 장부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는 당연직 재정부원이다.
-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일직에서 계속 2년을 초 과하지는 못한다.

제12조 임원전형

본회의 모든 임원은 총회임원 전형위원회에서 전형하고 절차에 따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전형규정

본회 임원의 전형 방법 및 그 절차는 총회임원 전형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실행위원회

제14조 구 성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증경장로부총회장, 총회임원, 사무총장, 상비부장, 노회장 및 장로부노회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 상비부장,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현직으로 제한하고 타인에게 회원권을 위임하지 못하며 겸직자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임 무

실행위원회는 총회 파회 후에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6조조 직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서기로 조직하고 총회장과 총회서기가 겸임하다.

제17조회 의

실행위위원회의 회의는 동일 회기 내에 4차를 넘지 못한다. 단,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실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상 비 부

제18조 상비부와 상비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비부와 상비국을 둔다.

-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고시부 5. 재정부
- 6. 지도부 7. 은급부 8. 군경부 9. 감사부
- 10. 재판국 : 9인(목사 6인, 장로 3인) 11. 출판국 : 5인(목사 3인, 장로 2인)

제19조 상비부의 직무

- 1. 정치부
 - 1) 총회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 2) 헌법과 관련하여 산하치리회와 기관에 지시할 사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 본회에 제의 한다.
 - 3) 헌의안을 심의한다.
 - 4)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중대 사안을 처리 보고한다.
- 2. 전도부
 - 1) 복음전도에 관한 사업을 연구 지도한다.
 - 2) 교회의 부흥성장정책을 개발 권장한다.
 - 3) 교단 부흥사회를 협력한다.
- 3. 교육부
 - 1) 각급 주일학교의 교육정책 수립과 그 업무를 관장한다.
 - 2) 교육정책 및 실현방안을 연구지도하며, 각종 공과 및 성경교재를 간행 보급한다.
 - 3)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를 주관하고, 주일학교의 계절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4)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수립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고시부
 - 1) 헌법에 따라 준목 자격고시를 매년 6월 중에 시행한다(정치 제65조, 130조 7항).
 - 2) 각종 고시에 관한 연구, 징려업무를 담당한다.
- 5. 재정부
 - 1)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교단과 총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6. 지도부

전국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연합회와 청장년 연합회를 지도 육성한다.

7. 은급부

목회자의 후생과 복지 및 은급에 관한 사업을 연구하고 총괄한다.

8. 군경부

군목 및 경목에 관한 업무와 그 사업을 총괄한다.

9. 감사부

- 1) 교단과 총회의 재정수지 사항과 각 상비부 및 위원회(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회계감사 를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2) 수감(受監)대상자는 자료(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 3)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산하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재판국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재판사건을 헌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1. 출판국

각종 출판사업과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 상비부의 최초회의

각 상비부의 최초회의 소집 책임자는 1년 조의 최선기명자(最先記名者)가 된다.

제21조 상비부원의 배정 및 조직의 기준

-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각 상비부원을 배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2. 상비부의 부원의 수는 총대수와 상비부의 직무를 고려하여 최소 9인, 최대 15인을 배정할 수 있다.
- 3.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원 3분의 1씩 개선(改選)하되 비 총대와 노회의 기 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4. 1인 1부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치부원, 재판국원, 출판국원은 예외로 한다.
- 5. 정치부에는 증경총회장 3인 이상, 재판국에는 증경총회장 3인, 교육부와 고시부에는 증경 총회장 1인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6. 정치부장은 직전총회장으로, 교육부장, 고시부장, 재판국장은 임직 15년 이상인 자로 한다.
- 7. 모든 상비부원은 동일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총대의 수가 과다한 노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각 상비부서는 위원장, 서기, 회계를 호선하여 조직하고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상비부서 활동의 제한

- 1. 총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의 부원이 될 수 없다.
- 2. 총회의 기타 임원은 상비부서의 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그 임원은 될 수 없다.

제23조 상설국의 설치

- 1. 각 상비부서는 소관부서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설국을 설치할 수 있다.
- 2. 상설국은 해당부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담당한다.

- 3. 상설국에는 국장 또는 간사 1인을 두되, 해당부서에서 추천하고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 4. 국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상설국의 재정은 해당 부서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다.
- 6. 상비부에서 상설국을 설치코자 할 때는 총회에 헌의하여 허락을 받고 헌법위원회의 규칙 수정보고로서 확정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위원

제24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1.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단, 모든 직능위원은 현직으로 제한한다.
- 2. 모든 위원회는 규칙대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회장이 위촉한다. 단, 직능위원은 예외로 한다.
- 3. 모든 위원회의 임원(위원장, 서기)은 각 위원회별로 호선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1년이 며 연임할 수 있다.
- 4.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정기위원

정기위원의 직무는 총회개회 준비이며 임기는 회기 내로 제한된다.

- 1. 통계위원 2인: 서기, 부서기가 겸임한다.
- 2. 공천위원 : 각 노회장이 위원이 되고, 목사임직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3회 이 상 노회장을 연임중인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총대추천서 검사위원 4인 :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가 겸임한다.
- 4. 헌의위원 3인 : 부총회장(2인)과 서기가 겸임한다.
- 5. 절차위원 3인 : 부총회장(2인)과 서기가 겸임한다.
- 6. 질서위원 2인 : 회장이 지명한다.
- 7. 지시위원 1인 : 회장이 지명한다.

제26조 정기위원의 임무

- 1. 통계위원 : 매년 4월 안에 노회보고서 서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고 총회 개회 2 개월 전에 수합하여 의사 자료에 보고한다.
- 2. 공천위원 : 각 상비부원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공 천위원의 대리참석은 위임받은 부노회장으로 제한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3. 총대추천서 검사위원 : 총대추천서를 총회개회 20일 전에 검사필하고 적법하지 못한 추 천서는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 4. 헌의위원 : 총회개회 20일전까지 접수된 헌의서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 5. 절차위원 : 총회절차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각 총대에게 우송한다.
- 6. 질서위원 : 총회기간 중 총대 및 기자, 방청인의 출입상황을 점검하고, 회의장(會議場) 질 서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 7. 지시위원 : 총회 기간 중 광고 및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 상임위원회

1. 신학위원회

- 1) 개혁주의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적 빈곤으로 인한 인본주의, 신비주의신학 등의 혼란한 신학을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한다.
- 2) 기독교이단과 사이비집단에 관한 연구, 대책, 상담업무 등을 담당한다.
- 3) 위원은 7인(총회개혁신학연구원장, 총회인준신학교 교장(학장), 조직신학교수 1인, 임 원회 추천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헌법위원회

- 1) 교단헌법, 헌법시행세칙, 총회규칙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2) 헌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3) 노회의 규칙, 개체교회의 내규(=정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재정(裁定) 및 개정에 대한 질의에 응하고 자문한다.
- 4) 위원은 7인으로 하되, 목사 4인(증경총회장 2인 포함), 장로 3인(증경부총회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3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유리위원회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직권 처리한다.
 - (1) 마태18:15~18 말씀대로 권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자.
 - (2) 총회의 질서를 해치고,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자.
 - (3) 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송사한 자(고전6:1~8).
 - (4) 언어폭력으로 본 회의장을 현저히 소란케 하는 자.
- 2)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즉각 시행한다. 단, 총회가 파회 중에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위원은 7인(증경총회장 1인, 증경장로 부총회장 1인,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임원회추천 3인)으로 한다.

4. 목회자 계속교육위원회

- 1) 목회자 재교육에 관한 사업 및 학적정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학적정리의 업무는 총회개혁신학연구원과 협조한다.
- 2) 위원은 7인(증경총회장 2인,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실천신학교수 1인, 교육부장, 임원회 추천 2인)으로 구성한다.

5. 교회부흥성장 촉진 위원회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총괄한다.
 - (1) 미 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사업.

- (2) 예배당 건축부지가 준비된 3촌(어촌, 농촌, 산촌) 교회의 예배당 건축 사업.
- (3) 도회지 상가 예배처소 인테리어 사업.
- (4) 낡은 예배당의 리 모델링 사업.
- 2) 위원은 9인(증경총회장 1인, 목사 4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고, 15인 이내의 전문위 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사회위원회

- 1) 대북민간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업과 남북통일에 관계된 연합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2) 구제사업을 장려하고, 특별재난에 대한 긴급지원업무를 총괄한다.
- 3) 은퇴목사 및 홀 사모후원, 장애우 및 소년 소녀 가장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4) 위원은 7인(증경총회장 1인, 증경장로부총회장 1인, 은급부장, 임원회추천 4인)으로 구성하다.

7. 총회임원전형위원회

- 1) 임원전형에 관한 업무일체를 관장한다.
- 2) 위원회는 현직 노회장과 임원회가 추천한 증경총회장 3인으로 구성한다. 단, 기본총대를 파송할 수 없는 노회는 예외로 한다.
- 3) 전형위원회의 조직, 임기 및 운영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사건이나 업무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구성하며 위임받은 일을 담당한다. 단, 총회 파회 후에는 실행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1.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는 총회에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위원을 선임한다.
- 2. 전권을 위임하는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로 조직하고 위원회 별로 호선한다.
- 2. 위원회의 활동은 1인 2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상비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상임위원은 비 총대도 가하다.
- 4. 각 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5. 각 위원회의 위원은 동일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직능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재정

각 위원회는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총회에 청원하고, 재정부는 그 청원안을 예산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7장 회 의

제31조 회의에 대한 규례

1. 총회

- 1) 총회는 매년 9월 제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단, 그 기간이 추석절과 중복되면 다음 주간으로 한다.
- 2) 장소는 본회에서 정한다. 단, 위임 혹은 불가피한 변경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임원회

1) 소집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여야 한다.

- 2) 주요 직무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의 사무적인 안건을 처리한다.
 - (2) 노회정비 및 영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단,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노회 회의록 검사 각 노회 서기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노회 회의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임원불신임

총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직무 불신임은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3. 상비부회 및 위원회
 - 1) 필요한 회무가 있을 때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2)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회집하여 본 회의에 보고할 준비를 한다.

제32조 의결 정족수

특별 규정으로 제한된 사항 이외의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임한 총대는 개회성수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고,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위임자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3조 단일안의 의결

- 1. 동의만 성립된 단일안이라 할지라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표 결로 동의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 할 때에라도 가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총회 파회 시의 잔무규정

총회가 파회할 때에 임원회에 위임하는 잔무의 범위는 총회에서 명시하여 위임한 사항으로 제한하며, 기타 총회적 결의사항이 아닌 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행정적 업무를 말한다. 단, 잔무의 처리기한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장 교단본부

제35조 교단본부

본 교단 사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두고 교단본부라 한다.

제36조 사무총장

- 1. 사무총장의 자격
 - 1) 행정능력과 정치적 식견이 풍부하고, 본 교단의 역사에 밝은 자로서 임직 15년 이상 경과한 목사로 한다.
 - 2)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 2. 사무총장의 직무
 - 1) 본 교단 사무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교단 및 총회와 관련된 대 내외의 사무와 업무를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 2)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근할 때에는 교단내의 다른 공직을 겪하지 않는다.
 - 3) 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며, 집행기간 내에 진행된 사무경과 및 그 상황을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 4) 본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 내외적으로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교단의 대표자는 될 수 없다.
- 3. 사무총장의 선출 및 임기
 - 1) 사무총장 후보자는 임원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에서 선출한다.
 - 2)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유고로 결원이 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서리를 선임하고, 파회 중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유고의 범위는 사임, 제명, 직무정지, 교단이탈, 이민, 사망 등이다.
 - 3)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무총장은 4대 보험과 상당한 급료(연봉)를 보장받는다.
 - 4) 직무수행에 중대한 흠결이 드러나 교단과 총회를 해롭게 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윤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는 불신임할 수 있고, 총회장은 총회에 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출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총회과회 중에는 실행위원회에 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7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의 선임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의 직무
 - 1) 사무국장은 교단본부 내의 모든 사무를 주관한다.
 - 2) 사무국장은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3)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업무보조 간사를 채용할 수 있다.
- 3. 사무국장의 임기 및 해임
 - 1)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총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9장 재 정

제38조 총회재원

각 노회의 상회비와 총회주일헌금, 기부금 및 기타 특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상회비의 책정기준

- 1. 노회의 형편에 따라 다음 중 택일한다.
 - 1) 기본 30만원과 개체교회당 1만원
 - 2) 기본 20만원과 개체교회당 15,000원
 - 3) 개체교회당 20,000원, 단, 최소 15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노회가 1차 택일하면 3년을 유지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3. 재정부는 총회 파회 후 15일 내에 노회별 면담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40조 회계보고

회계는 감사부의 감사를 필한 후 본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재정청원

- 1. 각 상비부서와 위원회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예산을 청원한 상비부서 및 위원회는 사업결과 보고 전에 감사를 필해야 한다.

제42조 재정집행

- 1. 교단본부 운영예산과 총회회계 집행예산을 분리 운영한다.
- 2. 교단본부 운영예산은 사무총장이 총회장의 재가(裁可)를 받아 재정부에 청원한다.
- 3. 총회회계 집행예산은 상비부 및 각 위원회에서 청원하고 재정부가 편성한다.
- 4. 교단본부 운영예산은 사무실유지 및 운영, 관리비, 대외연합기관 관련경비, 사무행정 비로서 사무총장이 재정부에 청원하고 재정부가 편성한다.
- 5. 총회회계 집행예산은 총회회계가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 단, 사무총장이 전 결할 수 없다.
- 6. 교단본부 운영예산은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 7. 재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외의 각종 회의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제43조 회계연도

총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노회 보고서와 문서

제44조 노회 보고서

- 1. 각 노회는 정기회 보고서를 폐회 15일 이내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고서에 기제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항목은 행정서식에 의한다.
 - 1) 임원명단
 - 2) 소속 교회 및 회원 주소록
 - 3) 교회 현황(교회 수 및 교인 수)
 - 4) 교역자 현황
 - 5) 기타 각종 통계

제45조 제출서류

총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와 청원서, 각종 문서들은 매건 각각 2부씩을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는 접수 후 1부씩을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모든 문서는 총회 표준문 서 양식을 따른다.

제46조 서류제출기한

총회에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등의 문서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총회 개회 후 상정하는 긴급동의 안건은 3개 노회 이상의 총대 15명 이상의 연서로 총회 개회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긴급한 헌의서는 개회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교단의 개체교회 수가 500처가 넘을 때까지는 제38조 사무국의 시행을 유보한다.
- 2. 본 규칙 제12조와 13조는 소속노회가 20개 처 이상이 되면 직전규칙(제104회 총회절차 21쪽)으로 자동 복구된다.
- 3.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의한다. 단, 파회 후에는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4.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4월 24일 실행위원회 개정

2019년 4월 29일 실행위원회 개정

2018년 9월 18일 총회개정

2017년 9월 22일 총회개정

총 회 임원 전형규정

총회임원 전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임원전형(銓衡)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임원을 전형함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고 공평무사하게 실시함에 있다.

제3조 소재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교단 본부 내에 둔다.

제2장 전형위원회

제4조 위원

전형위원은 총회의 헌법과 규칙대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기본총대(목사5인, 장로5인)를 파송하는 노회의 노회장과 전형위원회임원회에서 천거한 증경총회장 3인(증경장로부총회장 1인 포함)이 위원이 된다. 단, 노회장 유고시에는 해당노회의 서기가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조직과 함께 개시하여 총회신구임원교체와 함께 만료된다.

제6조 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로 조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단, 소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회계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 : 직전총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원전형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서기 : 공천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문서수발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3. 회계 : 본 위원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정족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임원전형후보자의 등록비로 충당한다.

제3장 전형후보자의 자격

제10조 전형심사의 기준

- 1. 총회장 : 현 목사부총회장으로 하고 현 목사부총회장 유고시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자 격자에 준한다(총회규칙 10조 2항).
- 2. 목사부총회장 : 목사 임직 20년 이상인 위임목사 총대로 하되 다음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본 교단 소속연한 7년 이상으로 총대회수 5회 이상인 자.
 - 2) 총회개혁신학연구원졸업 혹은 학적 보유자 및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자,
 - 3) 노회장을 역임한 자
- 3. 장로부총회장 : 임직 7년 이상인 장로총대.
- 4. 서기, 부서기 : 임직 15년 이상인 목사총대로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학적보유자, 전 북개혁신학원 졸업자.
- 5.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 임직 10년 이상인 목사총대로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학 적보유자,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자.
- 6. 회계, 부회계 : 임직 5년 이상인 장로총대.

제4장 예비후보 등록

제11조 예비후보 등록공고

총회장은 공천위원회 및 총회임원 전형위원회 소집공고와 더불어 임원전형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를 총회개혁공보에 게재(掲載)한다.

제12조 노회의 후보추천

- 1. 각 노회는 예비후보자를 4월(춘계)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임원후보자를 선임하고 노회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 2. 노회의 서기는 선임된 임원후보자의 완비된 서류를 전형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서류전형

임원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10일 이내에 소위원회에서 서류분류 및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전형

- 1. 총회장 전형후보는 현 목사부총회장이 된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 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준하는 자로 한다.
- 2. 서기 이하 모든 임원은 각각 직분별로 전형한다.
- 3. 모든 서류는 본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15조 구비서류

-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2매 첨부).
- 2. 소속노회장 추천서 1통.
- 3. 목사는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임직증명서, 장로는 임직증명서(시무기간 명시) 각 1통.
- 4. 소속 노회장 발행 위임목사 증명서 1통.
- 5. 가족관계증명서 1통.
- 6. 이력서 1통.
- 7. 본인 수락서 1통.
- 9. 등록 당월까지의 소속노회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완납 영수증 각 1통.

제16조 예비후보자의 의무

- 1. 등록 당월까지의 소속노회 총회 상회비의 완납.
- 2. 세례교인 헌금의 이행.
- 3. 소속 노회의 노회록 검사 필.
- 4. 총대 등록비 예납.
- 5. 총회발전기금 납부.

제17조 총회발전기금

노회가 임원전형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총회발전기금의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총회장 : 500만원 단, 자동승계가 아닌 경우와 서기 경력이 없는 자는 2,500만원
- 2. 목사부총회장 : 1,000만원 단, 서기 경력이 없는 경우는 1,500만원
- 3. 장로부총회장 : 300만원 단, 회계 경력이 없는 경우는 500만원
- 4. 서기 : 500만원 단, 임원 경력이 없는 경우는 1.000만원
- 5. 부서기 : 200만원
- 6. 회록서기 : 150만원
- 7. 부회록서기 : 100만원
- 8. 회계: 300만원

9. 부회계: 200만원

단, 임원으로서 연임하고자하면 모든 등록서류와 등록금은 면제하고, 총회발전기금은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직임원의 연임

- 1. 총회장은 임원등록마감 전에 현직 임원의 연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현직임원으로서 연임을 희망한 자의 수락서를 총회서기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임원의 연임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 4. 임원으로 연임하고자 하면 모든 등록서류는 면제한다.
- 5. 연임할지라도 동일직에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5장 전형절차

제19조 서류제출

- 1. 각 노회는 직분별 임원후보자를 총회규칙에 따라 선임하고 당사자의 수락서가 첨부된 구비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후보자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2. 본 위원회의 소위원은 접수된 서류를 10일 이내에 회집하여 적법하게 심사하고 전형자료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3. 소위원회는 접수현황을 파악하고 미등록된 전형후보자를 발굴하여 노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20조 전형절차

- 1. 최종 전형일시는 총회개회 전일 오후 5시, 총회장소로 한다.
- 2. 위원회 서기가 서류전형 경과와 그 결과를 유인물로 보고한다.
- 3. 연임희망 임원과 적법한 단독 후보자를 확정한다.
- 4.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의 확정우선순위는 임직년도, 신학교 졸업년도, 주민등록증의 생년 월일 순으로 하고 노회 및 지역별 안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5. 서류전형에 의하여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6. 투표에 의한 확정자는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하고, 1차 투표에서 확정자가 없을 경우 2 차 투표를 실시하고, 3차 투표 시에는 최다득표자가 확정된다.

제21조 노회별 안배의 원칙

- 1. 노회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사, 장로 각 1인을 허용한다.
- 2. 목사부총회장은 지역별(중부이남, 중부이북) 교차의 원칙을 지킨다.
- 3. 기타 임원의 경우에도 지역 및 노회별 편중을 피해야 한다.

제22조 총회보고

위원장은 총회 절차에 따라 전형결과를 본회(本會)에 보고한다.

제23조 추대증서 교부

본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임원들에게 위원장 명의의 임원추대증서를 교부한다.

경과 조치 및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총장은 총회규칙 제36조에 의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소속 노회가 20개 처가 될 때까지 시한부 시행한다.
- 3. 본 규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총회임원선거관리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 4.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규정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2020 년 4월 24일 실행위원회 제정

표 준 문 서 규 정

표 준 문 서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헌법시행세칙 제110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이하 본 교단이라 칭함) 및 산하 노회, 개체교회,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작성 처리되는 각종 공문서(준 공문서 포함)의 통일적인 관리와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공문서의 정의

본 규정에서 공문서라 함은 본 교단 또는 산하 각 노회, 개체교회, 기타 각 기관에 관련된 직원 또는 개인의 직무상에 필요한 공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 수발하는 모든 문서를 통칭한다.

제3조 공문서의 구분

본 교단이 규정하는 공문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법규문서 : 규칙, 규약, 기타 법규의 성격을 가진 각종문서
- 2. 일반 수발문서: 대내 대외로 수발되는 일반 행정의 성격을 가진 유통(流通) 문서
- 3. 특수문서 : 특수한 용건이나 규격 양식으로 작성 처리되는 각종 문서(예, 감사장, 회의록, 초청장, 계약서, 통계표, 도면, 영수증, 기타)

제2장 일반원칙

제4조 공문서의 책임소재

모든 문서의 최종적 책임은 그 문서를 발신하는 기관에게 있다.

제5조 발신의 원칙

- 1. 모든 공문서는 정상적인 행정 계통을 따라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하회에서 직속 상부기관이 아닌 상회에 발신하는 공문서는 그 직속 상회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회에서 하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도 이에 준한다).
- 3. 모든 공문서는 한 안건만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일건 일문서의 원칙).

제6조 집중관리의 원칙

일체 공문서는 공식적인 책임부서에서 집중 보존 관리해야 한다.

제3장 문서 운영관리

제7조 용지의 규격

도면, 통계표, 기타 특수문서를 제외한 모든 공문서는 흰색 A4용지 (210㎜× 297㎜)를 세로로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용지의 여백

모든 공문서의 철입 보존을 위한 여백으로 용지의 상단으로부터 3.5cm, 하단 2.5cm, 좌단과 우단은 각각 3cm의 여백을 둔다.

제9조 용어 및 문자

- 1.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는 의사 전달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서 표시할 수 있다. 단, 법규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 2. 모든 공문서의 용어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공문서의 문장은 가로로 띄어서 써야 한다.
- 4. 외국어 가운데 우리말로 표시할 수 없는 용어는 외국어 그대로 쓰되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원리를 밝혀 두어야 한다.
- 5. 모든 공문서는 정중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인사나 경어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공문서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제10조 글자의 색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채는 흑색으로 하고 수정 또는 특별한 표시가 필요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글자의 종류와 크기

글자의 종류는 바탕체를 기준으로 하고, 고유의 로고체는 병행이 가능하며, 글씨의 크기는 11호(=point), 줄 간격은 180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작성의 순서

모든 문서는 양식, 기안, 결재, 성문, 서명의 단계를 거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양식

- 1. 공문서는 기술형으로 된 일반 서식문서와 제정된 고정 양식문서로 그 양식을 대별한다.
- 2. 일반 서식문서는 현행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 일반 원칙을 준용한다.
- 3. 고정 양식문서는 본 규정이 정한 바 별첨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제14조 기안

공문서의 기안은 현행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이 정한 바 일반 원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 및 교회의 실정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제15조 결재

모든 공문서는 해 기관의 직제 계층을 따라 소정의 결재를 받은 다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성안문 작성

일반 수발 공문서의 작성은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서명

모든 공문서는 그 작성 최종 책임자(기관의 장)의 공인이 날인됨으로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인쇄물 기타 대량의 문서일 경우 그 기안문 또는 원본에만 서명하고 기타는 규정에 따른관인 생략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의 표시

공문서가 2매 이상일 때는 문서 하부 중앙 한계선 밖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및 수정 표시

공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때는 작성자가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한다. 중요한 공문서인 경우에는 수정한 곳에 난외에 그 수정 가제수(加除數)를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제20조 문서의 구성

특정 양식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된다.

- 1. 두문은 발신기관명, 수신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으로 구성한다.
- 2. 본문은 제목과 내용 및 붙임서류로 구성된다.
- 3. 결문은 발신자 명의와 필요시에 설치되는 배포처란으로 구성된다.
- 4. 발신자 기관명과 발신자 명의는 그 행의 중간 좌측에 둔다.
- 5. 본문이 끝나면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붙임서류가 있으면 붙임서류의 제목을 기록하고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제21조 발송자

모든 문서는 해 기관의 문서 취급 책임자 또는 취급 부서에 의하여 발송된다.

제22조 원본 보존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해 기관의 주무 부서에 보관 철입 보존 되어야 한다.

제23조 발송문서 기록

발송된 모든 문서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 문서 수발부에 그 주요사항이 기재 되어야 한다.

제24조 전언통신문

전신 또는 전화로 공적용건을 전달할 때는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전언통신문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문서의 접수

모든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 책임 접수해야 한다.

제26조 문서의 분류 및 처리

접수된 문서는 문서기호 또는 문건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주무 부서에 이송한다.

제27조 결재 또는 공람

접수된 모든 문서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재 또는 공람을 거친 다음에 처리 되어야 한다.

제28조 편철보관

처리가 완결된 문서는 그 기능별 종별로 보관 되어야 한다.

제29조 일건처리

모든 공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완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문서가 일괄 편철 보존되어야 한다.

제30조 보관철

- 1. 동일한 내용으로 보관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관철을 사용하되 보관철 내에 문서철 입량은 300매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관철은 문서 발생량과 종별 또는 보존 기관별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류 보관한다.
- 3. 모든 문서의 보관 철은 열람의 편리를 위한 색인표가 부착 되어야 한다.
- 4. 기타 문서보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부공문서 보관 보존 규정을 준용한다.
- 5. 각 기록 연혁 기록과 각종 회의록 교적원부 및 법이 지정한 각종 서류는 영구 보존으로 하고 여타의 서류는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을 적당히 설정 처리할 수 있다. 단, 보존 연한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할 때는 해당기관 대표의 재가를 얻은 다음 소각한다.

제31조 Fax 및 E-메일

Fax와 이 메일로 접수된 공문도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단, 중요문서는 원본을 발송 해야 한다.

제4장 공인

제32조 공인종류

공인은 기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간인(間印), 책임자의 실인(實印), 기타 공무에 사용되는 인장은 준 공인이라 한다.

제33조 기관인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은 기관인을 가지되 기타 고정기관에서는 직인만을 사용한다.

제34조 인영의 내용

기관인의 인영은 기관 명칭에 '(의)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명에 '(의)인' 자를 각각 붙여야 한다.

제35조 규격 및 인영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1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1. 직인 ① 총회장 3cm ② 재단이사장 2.8cm ③ 노회장 2.5cm ④ 당회장 2cm
- 2. 기관인 ① 총회 3.5cm ② 노회 3cm ③ 당회 2.8cm
- 3. 명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각각 그 직계에 따라 운용한다.

제36조 날인위치

- 1. 기관인은 문서의 두부에 설치된 기관명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2. 직인은 발신 교부 또는 인정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3. 책임자 실인은 문서본문이 끝난 다음 그 끝 자 우측에 날인한다.
- 4. 간인은 책임자의 실인을 매장마다 전후 장을 겹쳐서 적당한 곳에 날인한다. 간인은 중 요한 문건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 날인한다.

부 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공문서 규정을 따른다.
- 2. 본 규정은 제정(혹은 수정,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8 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 회 장 윤 서 구 목 사 헌법위원장 황 호 관 목 사

부록1. 사무행정 표준서식

부록1. 사무행정 표준서식

순번	서식번호	서 식 이 름	참고사항
01	교회서식 제1호	개체교회설립청원(목사)	당회(개체교회)
02	교회서식 제2호	개체교회설립청원(시찰)	당회(개체교회)
03	교회서식 제3호	교회설립예배 청원	목사(당회)
04	교회서식 제4호	교회(당회)조직 청원	교회(당회)
05	교회서식 제5호	당회조직보고	당회
06	교회서식 제6호	목사가입청원	목사(노회)
07	교회서식 제7호	개체교회 가입청원	당회(교회)
08	교회서식 제8호	교회합병(분립) 청원	당회(노회)
09	교회서식 제9호	원로목사 추대청원	당회(노회)
10	교회서식 제10호	위임목사 청빙청원	당회
11	교회서식 제11호	위임목사 청빙서	당회
12	교회서식 제12호	공동의회의장 소견서	당회(목사)
13	노회서식 제1호	목사청빙조회 의뢰	노회
14	노회서식 제2호	목사청빙조회 회보	노회
15	노회서식 제3호	목사위임 연장청원	노회
16	노회서식 제4호	노회합병청원	노회
17	노회서식 제5호	노회 분립청원	노회
18	교회서식 제10호	당회장(임시) 파송청원	당회(개체교회)
19	노회서식 제6호	전도목사 파송청원	노회(목사)
20	노회서식 제7호	전도목사 청빙서	노회(목사)
21	노회서식 제8호	기관목사 파송청원	노회(목사)
22	노회서식 제9호	기관목사 청빙서	노회(목사)
23	교회서식 제11호	목사고시 청원	당회
24	교회서식 제12호	목사고시 추천서	노회(목사)
25	교회서식 제13호	준목고시 청원	당회
26	교회서식 제14호	목사후보생(전도사)고시청원	당회
27	교회서식 제15호	장로고시 청원 및 추천	당회
28	교회서식 제16호	장로고시추천서	당회
29	교회서식 제17호	장로고시연기청원	당회
30	교회서식 제18호	장로피택(증원)청원	당회
31	교회서식 제19호	장로임직연기청원	당회
32	교회서식 제20호	장로휴무원	당회
33	교회서식 제21호	장로총대파송보고	당회(노회)
34	교회서식 제22호	장로선출보고	당회
35	교회서식 제23호	장로임직보고	당회
36	교회서식 제24호	신학교 입학청원 및 추천	당회
	· · · · · ·		I

37	교회서식 제25호	신학교 수학 계속청원	당회
38	교회서식 제26호	신학교입학 및 계속 추천	당회
39	교회서식 제27호	전임전도사 경력 확인	당회
40	노회서식 제10호	목사 사임청원	노회(당회)
41	노회서식 제11호	목사 사임서	노회
42	노회서식 제12호	목사 휴무 청원	노회
43	노회서식 제13호	목사 휴무원	노회(목사)
44	노회서식 제14호	목사 사직청원	노회(목사)
45	노회서식 제15호	목사이명 청원	노회(목사)
46	교회서식 제28호	준목, 목사후보생, 전도사이명청원	당회
47	노회소식 제16호	이명증서 송부	노회
48	노회서식 제17호	이명증서 접수 회부	노회
49	노회서식 제18호	목사이명(전임)청원	노회
50	노회서식 제19호	목사이명(전임)확인	노회
51	노회서식 제20호	총회총대선출보고	노회(총회)
52	노회서식 제21호	헌의서	노회(총회)
53	총회서식 제1호	결석자 위임장	총회
54	총회서식 제2호	이석자 위임장	총회
55	노회서식 제18호	총회총대 추천서	총회
56	개인서식 제1호	이력서	개인

표준서식 사용 안내

- 1. 교단과 산하 노회, 당회의 행정 통일을 기할 좋은 뜻으로 사용합시다.
- 2. 제시된 서식과 양식을 기본 틀로 하여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 3. 헌법과 규칙, 세칙에 맞는 서식을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 4. 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쓰시면 유익합니다.
- 5. 계속해서 수정증보 할 것입니다.
- 6.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나눕시다.
- 7. 교단 본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합니다.
- 8. [교회주소]에는 개체교회의 주소를, 노회사무소가 없을 경우 서기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표준서식-1: 교회설립청원(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가칭)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 유: 시찰위원장

제 목: 개체교회설립청원(개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헌법 정치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체교회의 설립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교역자 성명:
- 2. 교회명(가칭):
- 3. 교회주소:
- 4. 소속시찰:
 - 첨부 서류 1. 설립 대표자 이력서 2통
 - 2. 설립 교회 현황 표 2통
 - 3. 교회 설립에 필요한 의견서 2통
 - 4.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2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설립자

목사 ①

(경유) 시찰위원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2: 교회설립청원(시찰)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 서기, 임사부장

제 목:교회설립청원(시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시찰에서는 헌법 정치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체교회의 설립을 첫원하나이다.

-아 래-

- 1. 교회명(가칭):
- 2. 교회주소:
- 3. 교역자 성명:
- 4. 청원시찰:
 - 첨부서류 1. 설립 대표자 이력서 2통
 - 2. 설립 교회 현황 표 2통
 - 3. 교회 설립에 필요한 의견서 2통
 - 4.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1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시찰위원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3: 교회설림예배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 ○ 교회(가칭)

[교회주신]:	서욱특벽시	동대문구 이문	ž 153 (이무동)	(010)6249~	-5892
• احدا المحتدا		0 " 1'. " 1'.~	- 100 V	(101010440	0002

수 신:노회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교회설립예배 허락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교회설립예배를 드리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설립개요

교회이름:

교회주소:

교 역자성명 :

소속시찰:

설립예배일시:

- 2. 첨부서류
 - 1) 설립자 이력서 1통
 - 2) 교회 현황 표 1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4: 교회(당회)조직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overline{y}	ᆼ
)	خلا	-

	[교회주소]: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	-------	----------	-----------	----------------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 유:시찰위원장

제 목:교회조직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교단헌법 정치 제8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당회조직을 청원하오니 장로 선출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 1. 교세 현황
 - 1) 교역자:
 - 2) 예배처소:
 - 3) 세례교인:
 - 4) 원입교인:
 - 5) 재정상황:
- 2. 피택 장로 : 명
- 3. 첨부 서류:
 - 1) 담임교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2) 시찰위원장 소견서 1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5 : 당회조직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 : 당회조직 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장로를 장립하고 당회를 조직하여 조직교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 래-

1. 임직일시 : 년 월 일

2. 임직장소 :3. 임직장로 :

성 명	행 생	년 월	<u>일</u>	휴대전화	이 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끄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6 : 목사가입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	~5892
----------------	-------	----------	----------	-----------	-------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 유 : 시찰위원장 제 목 : 목사가입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 노회에 가입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	[적/	사항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명:

시무교회:

- 2. 구비서류
 - 1) 이력서 2통
 - 2)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2통
 - 3) 안수증명서 2통
 - 4) 주민등록등본 2통
 - 5) 본 노회 소속 목사 2인의 추천서 각 2통
 - 6) 교회와 동시 가입 시는 교회가입청원서 사본 2통 끝.

년 월 일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ス ム	(이페이/	

청원인

표준서식-7: 개체교회가입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 ,,,	, ,, , ,	•
\circ	시찰위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제 목:교회가입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 교회가 개혁교단 00 노회에 가입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현항

담임목사:

교회명:

주 소:

소속교단:

- 2. 첨부 서류
 - 1) 교회 연혁 기록부 2부
 - 2) 교단가입 결의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2부
 - 3) 교인 서명 날인 명단 2부
 - 4) 교세현황(원입 학습 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 5) 교역자 현황
 - 6) 제직현황
 - 7)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소유주 등)
 - 8) 교회가입신청서 2부

끝.

년 월 일 ○ ○ 시찰

시찰위원장

목사 인

시 행	문서번호/	/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8: 교회 합병(분립)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가칭)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교회 분립(합병)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추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교회를 분립(합병)하고자 교회정치 제11조에 의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현황

	구 별	분립전(합병후)교회	제1교회	제2교회
	교회 명			
	주 소			
부	소유형태			
부 동 산	대 지(m²)			
	연건평(m²)			
동	산			
	원입(남, 여)			
교 인	세례(남, 여)			
인	학생(남, 여)			
	계(남, 여)			
교	성 명			
교 역 자	직 명			
자	현 시무처			

- * 소유형태 난에는 본 교회 소유인지, 사유재산인지를 인지를 기재함.
- * 학생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로 세례교인일지라도 학생이면 이 범주에 포함함.
- 2. 분립(합병) 경위:
- 3. 구비서류: 1. 교인 서명 부, 2. 분립(합병)결의서, 3. 당회록과 공동의회록 사본 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통 5. 임대차 계약서. 끝.

년 월 일 분립(합병)청원 교회 대표 () () 목사 ()

시 행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전화/		접수일자/
	,	`	건쇄/	. 1 9 - 1 /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9 : 원로목사 추대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우트버기	도대므구	이므로	153	(이므도)	(010)62	10~F	5202
亚对十五 •	02402	시포국물시	るりでエ	이군도	155	(4)	(010)62	49~7)09 <i>2</i>

수 신:노회장

참 조:서 기 · 임사부장

경 유:시찰위원장

제 목:원로목사 추대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헌법 정치 제32조에 의거 원로목사추대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 래

목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목사 임직 연월일: 년 월 일

목사 임직 노회와 교회 : 〇〇 노회

본교회 시무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

*첨부서류 :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10: 위임목사청빙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 유: 시찰위원장

제 목: 위임목사청빙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목사(준목)를 위임(전임,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첨부 서류 1. 목사청빙서 3통

- 2. 공동의회 회장(부목사는 당회장) 소견서 3통
- 3. 이력서 2통

끝.

- * 타 교단 소속 목사의 경우 첨부 서류
 - 1. 신학교(M.Div.) 졸업증명서 사본
 - 2. 준목(강도사) 인허증 사본
 - 3. 목사 임직 증명서
 - 4. 소속증명서(교단, 노회)
 - 5. 가족관계 등록부 1통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11: 목사청빙서

목사 청빙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 월()원 × 연(개월)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인교회공동의회의장목사 ①*부목사는 당회장목사 ②

첨부: 입교인 연서 날인 (부목사인 경우 당회원 과반수)

번호	이름	직분	서명	번호	이름	직분	서명

목사 귀하

표준서식-12 : 공동의회 의장 소견서

공동의회 의장 소견서

(부목사는 당회장 소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임(전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투표 결과 청빙이 가한 줄로 알고 이에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투 표 일 : 투표장소 : 총투표수 :

득 표 수 : 찬성 : 표, 반대 : 표, 기권 : 표

소 견:

끝

년 월 일

교회

공동의회의장 목사 ①

*부목사는 당회장 목사 ①

표준서식-13 : 목사청빙 조회의뢰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 노회

[노회주소]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노히히과이 없는 겨우 노히서기이 주소	

수 신:노회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제 목 : 목사청빙 조회 의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노회는 아래와 같이 청빙을 결의하고 조회를 의뢰하오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 아 래 -

- 1. 의뢰 인
 - 1) 노 회 명 : 00 노회 노회장 000 목사
 - 2) 노회일시 :
 - 3) 노회장소:
- 2. 조회 인
 - 1) 성 명:
- 2) 시무교회 :
- 3. 첨부 서류
 - 1) 목사청빙서 2통
 - 2) 공동의회 의장 의견서 2부 (부목사는 당회장 의견서)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노회장

목사 ①

서 기

목사 인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14: 목사청빙조회 회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노회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노회회관이 없으면 노회 서기주소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 기 (경유): 임사부장

제 목: 목사청빙 조회의 회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귀 노회에서 의뢰한 목사청빙 조회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회보합니다.

조회대상: 직 분: 접수일: 조회결과: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노회장
 목사 ①

 서 기
 목사 ②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15 : 목사위임연장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 : 노회장 참 조 : 임사부장 경 유: 시찰위원장

제 목 : 목사위임연장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의 목사 위임예식을 헌법 정치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청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 아 래 ~

- 1. 위임허락목사:
- 2. 위임허락 일 : 년 월 일 (제 회 정기회(19 년 월 일)
- 3. 연기기간: 년 월 일까지
- 4. 위임 연장 사유: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임시당회장

목사 인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16: 노회 합병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노회

[노회주소]:	02402	시오트버 시	도메므그	이므로	152	(이므토)	(010)62	10~5802
エ외十公 ;	02402	시포국별시	るけです	이군도	153	(0) 77 (7)	-(U1U)6 <i>Z</i> 4	 ₽9~ეგ9∠

수 신 : 총회장 (경유) : 정치부장

제 목: 노회 합병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회를 합병하고자 하여 헌법 정치 제1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나이다.

다 음

1. 합병개요

1) 합병하는 노회: 제1노회; 00 노회 제2노회; 00 노회

2) 노회 현황

구 별	제1노회;	제2노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위임목사		
전임목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선 교 사		
시무장로		
은퇴장로		
무임장로		
예 배 당		
전 세		

2. 구비서류 1) 노회원 서명 부, 2) 합병합의서, 3) 노회 회의록 사본

	년	월	일		
합병청원 노회	대표	\bigcirc	\bigcirc	목사	ତ୍
	대표	\bigcirc	$) \cap$	목사	(<u>o</u>)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र्वेष	네일/

표준서식-17: 노회 분립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노회

[しおスス]・	02402	시으트법 시	동대문구 이문로	152	(시민도)	(010)6240~	5000
	0Z40Z	서도국범시	大けです りでと	. เอส เ	いいかんり		กหระ

수 신 : 총회장 (경유) : 정치부장

제 목: 노회 분립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노회를 분립하고자 하여 헌법 정치 제1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나이다.

- 다 음 -

1. 분립개요

1) 분립하는 노회: 제1노회; 00 노회 제2노회; 00 노회

2) 노회 현황

구 별	현재노회	제1노회;	제2노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위임목사			
전임목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시무장로			
은퇴장로			
무임장로			
예 배 당			
전 세			

2. 구비서류

1)	부릱격의무	2)	し刮出	이며브	3)	ㄴ히	히이로

년 월 일 분립 노회 대표 () () 목사 ① 대표 () ()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18: 당회장(임시) 파송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コネ
	ᄣᆇ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회관이 없는 경우 노회서기의 주소	

수 신 : 노회 장 (경유) : 임사부장

제 목 :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교회는 담임목사의 유고로 인하여 당회장이 공석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하나이 다.

- 다 음 -

- 1. 교회명:
- 2. 직전당회장 :
- 3. 유고사유: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노회 시 찰 위 원 장 목사(인)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19 : 전도목사파송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 노회

	<u> </u>	<u> </u>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 *	시 동대문구 이문로 15 회관이 없는 경우 노회서		010)6249~5892
수 신 : 노회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 : 전도목사(전도사) 파송	능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3			
다음 사람을 전도목사로 파송하고지	사 서류를 구비하여 청	원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직 명:			
2. 청원내역			
1) 목사안수일 :			
2) 파송 지역 :			
3) 파송 사유:			
4) 전 도 비:			
3.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파송 지 현황 진술서 1부			
3) 청빙서(서식)		7	1
	년 월	일	
		노회	
	전도부장	목사 @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20: 전도목사 청빙서

전도목사 청빙서

○ ○ ○ 목사 귀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노회 전도부는 귀하가 신덕과 재능이 겸비하여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실 줄로 알고 본 노회의 목사로 임직하여 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매월 생활비 일금 원(년 개월)을 지급하기로 작정하고 전도목사로 청 빙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노회장 목사⑩

전도부장 목사⑩

표준서식-21 : 기관목사파송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 () 노	회 ———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현 * * * * * * * * * * * * * * * * * * *	회관이 없는 경우 1			(010)6249	9~5892
주님의 은혜와 평 다음 사람을 00의 기관 목 바랍니다.		· ·	_ , _ ,	•	H락하여 주시기
1. 인적사항 성명: 주소: 직명: 2. 청원내역 1) 목사안수일: 2) 청원기관: 3) 청원사유: 4) 월급여(연봉): 3. 첨부서류 1) 기관 내 사역현황 진술 2) 이사회의 청빙 결의서(3) 청빙서(서식) 1통	서 1통	·민등록번3	<u>ō</u> .:	" E	
	년	월	일 노회		
	전도부장		목사	(1)	
시 행 문서번호/ 담당자 주 소 ()		시행일자/ 선화/	०]म	접수일자 FAX/ 일/	-/

표준서식-22: 기관목사 청빙서

기관목사 청빙서

○ ○ ○ 목사 귀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_____는 귀하가 신덕과 재능이 겸비하여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실 줄 알고 귀하를 본 기관의 목사로 ()년간 청빙하오니 승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본 기관에 부임하여 시무 중에는 본 기관의 급료 규정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기관)

첨부 : 이사 서명 연명부

표준서식-23: 목사고시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 : 고시부장

(경유)

제 목: 목사고시 청원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헌법 정치 제27조에 의거하여 목사고시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교회:

- 2. 첨부서류
 - 1) 준목 인허증 사본 1통
 - 2) 이력서 1통
 -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 4) 청빙서 사본 1통
 - 5) 준목 교육필증 사본 1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24 목사고시 추천서

추 천 서

성 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당회 소속 준목으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추천하나이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인)

^{*} 준목고시, 목사후보생, 전도사 고시의 추천서도 이에 준함

표준서식-25 : 준목고시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overline{}$	÷
()	()	11/_	오
\sim		_	-

[교회주소]:	02402	서욱트벽시	동대무구	이무로	153	(이무도)	(010)69	249~5892
1 1 1 1 1 1 1	02402	'' ਦ '' ਦ''	이게만기	~ 1 반 나	100	\ ` 1'- 0 /	(010)02	24J JUJ2

수 신:노회장

참 조 : 고시부장

(경유)

제 목: 준목 고시 청원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준목 고시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속교회:

- 2. 구비서류
 - 1) 당회장 추천서(원서) 1통
 - 2) 이력서 2통
 - 3) 가족관계증명서 2통
 - 4) 혼인관계증명서 2통
 - 5) 성경통신대학 또는 교사통신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사본 2통 .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٥	메일/

표준서식-26: 목사후보생(전도사)고시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	동) (010)6249~	~5893
-----------------------------------------------------	----------	-------	-------	----------	----------	---------------	-------

수 신:노회장 참 조:고시부장

(경유)

제 목: 목사후보생(전도사)고시 청원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도사고시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목사후보생은 제68조; 전도사는 제71조임

1.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속교회:

- 2. 구비서류
 - 1) 당회장 추천서(원서) 1통
 - 2) 이력서 2통
 - 3) 가족관계증명서 2통
 - 4) 혼인관계증명서 2통
 - 5) 성경통신대학 또는 교사통신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사본 2통(목사후보생 생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27 : 장로고시 청원 및 추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9409	기이트베기	도네ㅁ그	시민교	150	(ペ)ロビ)	(010)	CO 40 -	FOC	าก
「ルメナな」・	02402	시포국별시	オリナナ	이군도	153	いってん	(OTO)	n <i>z</i> 491	~ວຽເ	12

수 신:노회장 참 조:고시부장

(경유)

제 목: 장로고시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헌법 정치 47조에 의거하여 장로고시를 청원하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 청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첨부 서류
 - 1) 이력서 2부
 - 2) 가족관계증명서 2부
 - 3) 혼인관계증명서 2부
 - 4) 성경통신대학 또는 교사통신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사본 2부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 이메일/

표준서식-28 : 장로고시 추천서

추 천 서

성 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장로로 선출되어 헌법 정치 제47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간의 교양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장로고시의 응시자로 추천하나이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인)

표준서식-29: 장로고시연기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	92
-------------------------------------------------------	------------------	-------	----------	-----------	--------------	----

수 신:노회장 참 조:고시부장

(경유)

제 목: 장로고시 연기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로고시의 연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청원내역

선출 연월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이메일/

주 소 ()

표준서식-30 : 장로피택(증원)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교회주소] :	09409	기이트베기	도네ㅁ그	시민교	150	(ペ)ロビ)	(010)	CO 40 -	FOC	าก
「ルメナな」・	02402	시포국별시	オリナナ	이군도	153	いってん	(OTO)	n <i>z</i> 491	~ວຽເ	12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유)

제 목 : 장로피택(증원)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 장로 피택(증원)의 필요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입교인 수:

현시무장로수: 명

증원 청원 수 : 명.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이메일/

주 소 ()

표준서식-31 : 장로임직연기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교회
수 신 : 노 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 : 장로임직 연기 청원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아래와 같이 장로임직 연기를 청원하오니	
1. 인적사항 성명: 주민 주소:	등록번호:
 2. 청원내역 피택 연월일 : 고시 합격일 : 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도	문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담당자 주 소 ()	시행일자/ 접수일자/ 전화/ FAX/ 이메일/

표준서식-32 : 장로 휴무원

장로 휴무원

성 명: ①

생년월일: 년 월 일

위의 장로는 교단헌법 정치 제51조에 의하여 본 교회시무장로 직의 휴무 원을 제출하나이다.

1. 임 직 일: 년 월 일

2. 휴무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시무장로 (인)

당회장 귀하

표준서식-33: 장로총대파송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09409	刀이巨刑刀	도네면그	시민교	152	(ペ)ロエ)	(010)69	240-	FOO	า
「ルタナな」。	<i>UZ4UZ</i>	시포국별시	マリテエ	이군도	าอฮ	いってんり	-(010)02	Z49~	$\Omega \delta S$	_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유):서 기

제 목: 장로총대파송 보고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제 회 정기회에 아래와 같이 장로총대의 파송을 보고합니다.

세례교인 수: 총대장로 수: 총대장로 명부:

번호	성	명	임직 년	년,월,일	주	소	전 화
01			년 .	월 일			
02							
03							
04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34: 장로선출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 교 회

[교회주소] :	09409	기이트베기	도네ㅁ그	시민교	159	(ツ)ロビ)	(010)	CO 40 -	FOO	าก
「ルタナな」。	02402	시포국별시	オリナナ	이군도	153	(いてん)	(OTO)	n <i>z</i> 491	~ວຽ:	92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 장로 선출 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를 선출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 공동 의회 : 투표 일자 : 투표 장소 :

당 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총 투표수:

득 표 수: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지 행 문서번호/ 지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35 : 장로임직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77	징
	سلا	오

[교회주소]:	02402	서욱특벽시	동대무구	이무로	153	(이무도)	(010)	0)6249	~58	92	
1 1 1 1 1 1 1	02402	/' 	0 11 11 1	~ I 1/ JL	1 1 / 1 / 1	(11 0 /	1111	<i>// () () () (</i>	•)()		,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유)

제 목 : 장로임직 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 임직 식(취임)을 거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직(취임)일자: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36: 신학교입학 청원 및 추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 교회

[교회주소]:	09409	刀이巨刑刀	도네면그	시민교	152	(ペ)ロエ)	(010)69	240-	FOO	า
「ルタナな」。	<i>UZ4UZ</i>	시포국별시	マリテエ	이군도	าอฮ	いってんり	-(010)02	Z49~	$\Omega \delta S$	_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고시부장

(경유) : 시찰위원장

제 목: 신학교입학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 사람이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므로 이에 추천하며 서류를 구비 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교회:

수세일: 년 월 일

교회직분:

2. 구비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통
- 2) 이력서 2통
- 3) 가족관계증명서 2통
- 4) 혼인관계증명서 2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37 : 신학수학 계속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02402	서운트법시	동대무구 이무로	153 (이무도)	$(010)6249 \sim 5892$

수 신:노회장 참 조:고시부장

(경유)

제 목:신학수학계속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람이 총회개혁신학연구원 학년에 계속 수학하고자 하므로 이에 추천하며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교회 :

수세일:

교회직분:

- 2. 첨부서류
 - 1) 이력서 2통
 - 2) 가족관계증명서 2통
 - 3) 혼인관계증명서 2통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 메일/	

표준서식-38 : 신학교 입학 및 계속 추천

추 천 서

성 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무흠한 세례교인이며 본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자로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입학 지원에 적합한 자이기에 이를 추천 하나이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노회장 목사(인)

당회장 목사(인)

표준서식-39 : 전임전도사 경력확인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17	회
	44-	_

[교회	주소] :	0240	2 서	울특별	멸시 동대	문구 여]문i	로 153	3 (이문	동) (010)62	49~589	2
참 조 (경유)	: 노호 : 서 : : 전임	기	사 경	력 후	ት 인서									
.36.		•		_	강이 노호	•			. – .		•	•	ነ ኤ. ብ 😑	11-1
		선임선	1노시	ㆍ 시ㆍ	무경덕글	: 아래	와 ^	같이	왁인하.	오니	子々	ት የ	}수에 침	·고하시
기 바림	344.				_ 0	}	ù _							
1. 성명	녕 :			(남, 여)	•			번호 :					
2. 주소	ት :													
3. 전약	심전도시	가 시두	구경력											
1)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노회	()교회	
2)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노회	()교회	
3)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노회	()교회	
4. 신형	박대학원	를 졸업	후	교육	·전도사	시무기	경력:	:						
졸업	년도의	1월1	일부터	· 인	정하고 교	교육전도	E.사7	병력의	절반을	전임	전도	사건	병력으로	인정함.
1)	년	월	일	~	년		일	() ኔ	-회	()교회	
2)	년	월		~	년		일) ኔ	-회	()교회	
3)	년	월	일	~	년	월	일	()	_회	()교회	
					위와			인합u 일	니다.					
	()노	회	() 교호	당	회장	О	C)	O	인	
	() 교호				C)	O	인	
	()노	회	() 교호	당	회장	O	C)	O	인	

표준서식-40 : 목사 사임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० ज ड	1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	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제 목 : 목사 사임(사직)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본인은 교단헌법 정치 제37조에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사임(사직)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직 명: (위임, 전임, 부) 	주민등록번호 :	
 사임내역 시무교회 : 위임(부임)일 : 사임사유 : 		끝.
	년 월	일
		교회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담당자 주 소 ()	시행일자/ 전화/	접수일자/ FAX/ 이메일/

사 임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무교회:

교회주소:

본인은 위 교회에서 년 월 일부터 (위임, 담임, 부)목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금번 ○○○○ 사정으로 사임코자 하나이다.

년 월 일

경유 ○ ○ 시찰위원장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 🔾 노회장 귀하

* 사직원의 서식도 이에 준한다.

표준서식-42 : 목사휴무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그 교회

[교회주소]: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	153 (이문동)	(010)6249~5892
--------------------------------	-----------	----------------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 기

(경유) :

제 목:목사휴무청원

성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노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교단헌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무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 회 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 교회

성 명: ○ ○ ○ 목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유:

첨 부: 1. 당회록 사본 1 통

2. 휴무원서 1 통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①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43 : 목사 휴무원

목사 휴무원

성 명: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교단헌법 정치 38조에 의거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직 휴무원(休務願)을 제출하나이다.

- 1. 교회 이름 :
- 2. 교회부임일 : 년 월 일
- 3. 휴무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교회 당회장 목사 ①

시찰 위원장 목사 ①

노회장 귀하

표준서식-44 : 목사 사직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 上회
[교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유) 제 목:목사 사임(사직)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교단 헌법 정치 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임(사직)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명: (위임, 전임, 부)
2. 사임내역 시무교회 : 위임(부임)일 : 사임사유 : 끝.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회
교회 담임목사 목사 ①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45 : 목사이명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neg	충
\bigcup	\bigcup	JĽ	¥

[교회주소] : 024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	92

수 신 : 노회 장 참 조 : 임사부장

(경유)

제 목 : 목사이명(전임) 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명 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 명: 위임(전임) 목사

2. 청원내역

시무교회:

이거노회 :

이거교회:

이명사유:

3. 첨부

이력서 2부.

끝

년 월 일

교회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46 : 준목, 목사후보생, 전도사 이명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 노회

) () 교회
[교회주소]: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수 신:노회장 참 조:임사부장 (경유) 제 목:이명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위에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거하고자 청운	
1. 인적사항성 명:주 소:직 명:	주민등록번호 :
2. 청원내역시무교회 :이명교회 :이명노회 :이명사유 :	
3. 첨부 서류 이력서 2부. 끝.	
년	월 일
Ę	교회 강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담당자 주 소 ()	시행일자/ 접수일자/ 전화/ FAX/ 이메일/

표준서식-47 : 이명증서 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노회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 3 수 신 : ○○ 노회장	동대문구 이문로 153 -회회관이 없으면 노회 서기	
참 조 : 서기		
(경유)		
제 목 : 이명증서 송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 본 노회에서는 아래 사람의 이명을 시기 바랍니다.		
 이명결의 결의회의 : (노회 혹은 임원회) 결의일자 : 		
2. 이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명:
주 소:		
소속교회 :		
이거교회 : 이명사유 :		
31.8/111 •		
3. 첨부		
이력서 1부	J	<u>.</u>
	-1 61 61	
	년 월 일	ા સ્ટો
	1 귀기	上到
	노회장	목사 ①
) A Plul-/	기의시키 /	로 스시네 /
시 행 문서번호/ 담당자	시행일자/ 전화/	접수일자/ FAX/
주 소 ()	C-11	이메일/

표준서식-48 : 이명접수 회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 노회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노회3	회관이 없.	으면 노회	서기주	소		
수 신	: 노호	장								
참 조	: 서	기								
(경유)	:									
제 목	: 이명	증서 접]수 회보 							
귀 :			와 평강이 아래 사						합니다.	
	이 명	્) :								
	· 직									
	접수	일:							끄. E.	
					년	월	일			

노회

목사 ①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노회장

표준서식-49 : 목사이명(전임)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L	중
\bigcup	\bigcup	<u></u>	3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노회회관이 없으면 노회 서기주소	

수 신:노회장

참 조:서 기

(경유) :

제 목: 목사이명(전임) 청원서

성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노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노회는 다음 사람을 청빙하고자 이명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명: (남, 여)
- 2. 주민등록번호:
- 3. 시무예정교회:

첨 부: 청빙서 사본 1부.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노회

노회장 목사 ①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 -50 : 이명확인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 노회

[노회주소] : 024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3 (이문동)	(010)6249~5892
* 노회회관이 없으면 노회 서기주소	

수 신:노회장 참 조:서 기

(경유) :

제 목:이명 확인 송부서

귀 노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노회의 청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명하오니 접수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명: (남, 여)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 노회 노회장 목사 ①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51 : 총회총대선출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000 노회

수신: 총회장

발신: 00 노회 노회장

참조: 서기/총대천서위원

제목: 제 회 총회 총대선출보고

본 노회는 교단헌법 정치 125조 1항에 의거하여 제 회 정기회에서 선출 된 제 회 총회의 총대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번호	성 명	소속교회	직 분	임직 일	구 별
01				년 월 일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노회

노회장: 목사(인)

서 기: 목사(인)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52 : 헌의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000 노회

[노회주소]

수 신:총회장

헌의자: 00 노회 노회장

참 조: 서기/헌의 심의위원

제 목: 에 관한 헌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제000회 성 총회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나이다. 위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헌의 하나이다.

-다 음-

- 1. 헌의 이유
- 2. 법적근거(타당성)
- 3. 헌의목적
- 4. 조치사항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노 회

노회장 목사(인) 서 기 목사(인)

지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이메일/ 표준서식-53 : 결석자 위임장

결석자 위임장

수 임 인					
성 명	병 명 총회장;000목사				
총 회 일 정					
제 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제 회 총회				
일 시	년 월 일(화)2시 ~ 년 월 일(금)				
장 소	00 교회 예배당				

상기 수임인에게 아래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사유 및 위임내용

제103회 총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므로 본회 성원(출석) 및 결의사항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2020 년 9월 일

위 임 인

소속노회 : 노회

성 명: (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귀하

우)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73-4(연건동195-15) 사무총장/010-6358-0191(카톡) 표준서식-54 : 이석자 위임장

이석자위임장

수 임 인						
성	명	총회장 목사				
	총회일정					
제	목	제 회총회 제 일차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일 시 까지				
장	소					

상기 수임인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사항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 회 총회 제 일차 시~ 시까지 참석하지 못 함으로 출석 및 결의사항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2020 년 9월 18 일

위 임 인

소속노회: 노회

성 명: (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귀하

우)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73-4(연건동195-15) 사무총장/010-6358-0191(카톡) 표준서식-55 : 총회총대추천서

제 회 총회 총대 추천서

	성 명		(목사 · 장로)
	소속노회		노회
	소속교회		교회
	휴대전화		E-Mail
주 소	집 :		
7 3	교회 :		
세례교인 헌금		교회/	원

서약서

위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 제 회 총대로서 총회 규칙 제5조와 6조에 명시된 총대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 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7월 일

서약인 :

(서명 혹은 날인)

추 천 서

위 서약 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제103회 총회의 총대로 추천합니다.

2020 년 7월 일

노회장:

서 기:

- * 참고사항 : 1. 필히 사진을 첨부하여서 파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 2. 활동을 원하시는 상비부나 위원회를 지원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표준서식-56 : 이력서

사					(ا(د			력			서			
		성	!	명							주민	민등록 t 	호		
진				년	Ą	<u> </u>	일생	(음	%)						
본 적	}														
주 소	٤														
호적관	계	호	주외	나의 관	上계					호주	성명				
년 월	j d	일		ਰੁੱ	1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처

부록2. 권징조례서식

번호	서 식 번 호	서 식 계 목
1	권징 제 1 호 서식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2	권징 제 2 호 서식	변호인 선임계
3	권징 제3-1호 서식	피고인 소환장
4	권징 제3-2호 서식	피의자 출석요구서
5	권징 제4-1호 서식	권징 시벌용 고소(고발장)
6	권징 제4-2호 서식	권징시벌용 고소(고발)취하서
7	권징 제5-1호 서식	행정소송 소장
8	권징 제5-2호 서식	결의취소소송 소장
9	권징 제5-3호 서식	치리회간 소송 소장
10	권징 제5-4호 서식	선거소송 소장
11	권징 제5-5호 서식	청구소송 변경신청서(행정소송용)
12	권징 제5-6호 서식	소 취하서(행정소송용)
13	권징 제6-1호 서식	불기소 처분결정 및 통지서
14	권징 제6-2호 서식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15	권징 제6-3호 서식	당회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16	권징 제6-4호 서식	항고기각불복 재항고장
17	권징 제6-5호 서식	노회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재항고장
18	권징 제7-1호 서식	기소장
19	권징 제7-2호 서식	기소통지서
20	권징 제7-3호 서식	권징시벌 피고인 답변서
21	권징 제7-4호 서식	행정소송 피고인 답변서
22	권징 제7-5호 서식	권징시벌 기소위원회 준비서면
23	권징 제7-6호 서식	행정소송 원고 준비서면
24	권징 제7-7호 서식	기소변경허가신청서
25	권징 제7-8호 서식	기소취소서
26	권징 제7-9호 서식	기소취소 통지서
27	권징 제8-1호 서식	권징시벌 판결문
28	권징 제8-2호 서식	행정소송 판결문
29	권징 제8-3호 서식	권징시벌 및 재심 결정문
30	권징 제8-4호 서식	행정소송 결정문
31	권징 제8-5호 서식	판결집행문
32	권징 제8-6호 서식	판결집행보고서
33	권징 제8-7호 서식	가중시벌청원서
34	권징 제9-1호 서식	항소(상고)장
35	권징 제9-2호 서식	항소(상고) 취하(초기)서
36	권징 제9-3호 서식	항소(상고)이유서
37	권징 제9-4호 서식	항소, 상고답변서
38	권징제10-1호 서식	위탁판결청원서
39	권징제10-2호 서식	재심(특별)청구 청원서

권징 제1호 서식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재판국원 기피 신청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신 청 인	: 피고인 ○○○ 또는 ○○기소위원장 ○○○
	(피고 ○○○ 또는 원고 ○○○)
리기리시	(총회 재판국 ○○○)
씌신성인	: ○○재판국원 ○○○
기피신청	사유
1.	
2.	
3.	
소명자료	
1.	
2.	
	위와 같이 기피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소위원장, 피고인) ○○○ (인)
	(원고, 피고)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특별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 권정시벌사건인 경우에는 신청인 난에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을 기입하고, 행정(소원)사건인 경우에는 피고 또는 원고를 기입한다. 권징 제2호 서식 : 변호인 선임계

변호인 선임계

사건번호:

사건명:

변 호 인 : ○○○ 나이: 성별: 직분:

소 속: ○○교회 (○○기관)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피의자)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위의 사람을 ○○재판국(또는 ○○기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변호인과 연명한 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bigcirc \bigcirc (인)

변호인 〇 〇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장 귀하) 권장 제3-1호 서식 : 피고인 소환장

피고인 소환장

사건번호:

사 건 명: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재판일시 : 년 월 일 시

2. 재판장소 :

3. 수취인: ○ ○ 귀하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재판국 재 판 국 장 ○○○ 목사(인) 재판국 서기 ○○○ 목사(인)

※유의사항: 권정시벌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피고인의 난을 모두 기입하고, 행정소송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피고인의 난을 모두 삭제하여, 원고를 소환하려면 고소인(고발인)의 난에 원고 및 그인적사항을, 피고를 소환하려면 피고인 난에 피고 및 그인적사항을 각각 기입하고, 원고, 피고 양자를 동시에 소환하려면 원고, 피고, 및 그인적 사항을 모두 기입하다.

권징 제3-2호 서식 : 피의자 출석요구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

사건번호:

사 건 명: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 나이 : 성별 : 직분 :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하고자 하오 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조사 일시 : 년 월 일 시

2. 조사 장소:

3. 수 취 인 : ○○○ 귀하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 목사(인) 기소위원회서기 ○ ○ 목사(인) 권징 제4-1호 서식: 권징 시벌용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죄과사실

- 1.
- 2.
- 3.

증거

- 1. 서증
- 2. 물증
- 3. 인증

첨부: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고소(고발)를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소인(고발인)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치리회장(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4-2호 서식 : 권징시벌용 고소(고발) 취하서

고소(고발)취하서

사건번호:

사건명: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위 사건의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소인(피고발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고발)를 모두 취하합니다.

년 월 일

고소인(고발인)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5-1호 서식 : 행정소송 소장

원

고

행정소송 소장

성	명 :	$\circ \circ \circ$	ι	구이 :	성틱	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선정대표자							
성	명:($\bigcirc \bigcirc \bigcirc$	ı	} ાઃ	성별	1: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00)치리회장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성	})	
행정행위의	내용	:					
행정행위가	있은	날:	년	월	일		
행정행위가	있음	을 안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 [
청구의 원인	<u>l</u> :						
1	l .						
2	2.						
3	3.						
첨부 : 1. 재	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	장 부본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 고 ○○○(인) 선정대표자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특별 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고사항: 원고가 다수일 때 3인 이하의 대표를 선정한 경우에만 선정대표자의 난을 기입한다.

권징 제5-2호 서식 : 결의취소 소송 소장

결의취소소송 소장

소원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소원인 : ○○치리회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소원의 종류: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

소원대상 결의내용

1. 결의한 날 : 년 월 일

2. 행정행위가 있은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본

위와 같이 헌법 권징조례 제174조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경유: 00회 임원회) 권징 제5-3호 서식 : 치리회간 소송 소장

치리회간 소송 소장

원 고:○○ 치리회장 ○○○ 직분	:
주 소:	
전화번호 :	
원고측 소송위원 :	
① 이 름: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② 이 름: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③ 이 름: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피 고:○○ 치리회장○○○ 직	분.
주 소:	전화번호 :
소송의 대상 : (권한의 유무 또는 권한	의 행사)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	
1.	
2.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본	
위와 같이 치리회간의 소송을 제기	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 🔾 🔾 (인)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5-4호 서식 : 선거소송 소장

선거소송 소장

원고: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선거인 이름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 : ○○노회 선거관리위원장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선거소송의 종류: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선 거 일: 년 월 일

당선결정일: 년 월 일

청 구 취 지 : 청 구 원 인 :

1.

2.

3.

첨부: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본

위와 같이 선거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후보자 ○○○ 원고 선거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원고가 후보자이면 후보자의 난에, 선거인이면 선거인의 난만을 기입하고, 피고의 난도 주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어느 하나만 기입한다. 권징 제5-5호 서식 : 청구소송변경신청

청구소송 변경신청서

사건번호:

사건명: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원 고:○○○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취지의 변경내용:

청구원인의 변경내용: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특별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행정소송의 종류가 행정소송,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의 난에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선거소송인 경우에는 ○○치리회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권징 제5-6호 서식 : 행정소송용 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건번호:

사건명: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원 고:○○○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 취지의 변경내용:

청구 원인의 변경내용: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특별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행정소송의 종류가 행정소송,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의 난에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선거소송 경우에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적 사항을 기입한다. 권징 제6-1호 서식 :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고소인(고발인) : ○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	화번호 :
피고소인(피고발인) ∶ ○ ○		나이:	성기	豊 :	직분:
주 소:				전:	화번호 :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	·			행위	
불기소처분결정의 주문형태	(□에	∨한디	 -)		
□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	범죄 '	인정 인	: 됨, □	증거불	충분
□ 죄가 안 됨.					
□ 기소권 없음.					
□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일자: 년 월 일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불기소처분결정하고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 ○ ○ (인)

기소위원회서기 : ○ ○ ○ (인)

고소인(고발인) ○○○ 귀하 피고소인(피고발인) ○○○ 귀하 권징 제6-2호 서식 :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고소인(고	(발인)	: 000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피고소인((피고발역	(d): ()()) 나):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죄과 명 : 불기소처	분결정의 □ 혐의 □ 죄가	주문형 없음	태 (□에	∀한다)	증거불충분
불기소처.		•	년 월	일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헌법 권징조례 제71조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인) 기소위원회서기 ○○○ (인)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징 제6-3호 서식 : 당회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

항 고 장

사건번호:

사건명:

고소인(고발인):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일 :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간주일 :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불기소처분의 주문형태:

- ① 기소유예 ②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 또는 증거불충분) ③ 죄가 안 됨.
- ④ 기소권 없음 ⑤ 각하

불복이유:

- 1.
- 2.
- 3.
- 첨부: 1.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 사본
 - 2. 불기소처분결정 및 통지서 사본
 - 3. 기타 증거자료
 - 위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또는 불기소간주)에 불복하여 권징조례 제72조에 의거하여 항고합니다.

년 월 일 항고인(고소인·고발인)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당회기소위원회 경유·기소위원장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6-4호 서식 : 항고기각 불복

재 항 고 장

사건번호:
사 건 명 :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일 : 년 월 일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간주일: 년 월 일)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불기소처분의 주문형태:
① 기소유예 ②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불충분) ③ 죄가 안 됨
④ 기소권 없음. ⑤ 각하
○○노회재판국의 결정주문 :
○○노회재판국의 항고기각 결정문 통지받은 날 : 년 월 일
불복이유:
- ,
1. 2.
3.
점부 : 1.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 사본, 2. 불기소처분결정 및 통지서 사본
3. 항고장 사본, 4. 항고기각결정문 사본 5. 기타 증거자료

위 ○○노회재판국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권징조례 제72조 3항에 의거하여 재항고합니다.

년 월 일
재항고인(고소인·고발인)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기소위원회(경유·기소위원장)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6-5호 서식 : 재항고장(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

재 항 고 장

사건번호: 사건명: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일 :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간주일: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 ○○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불기소처분의 주문형태:

- ① 기소유예 ②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불충분) ③ 죄가 안 됨.
- ④ 기소권 없음. ⑤ 각하

불복이유:

- 1.
- 2.
- 3.

첨부: 1.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 사본. 2. 불기소처분결정 및 통지서 사본

- 3. 기타 증거자료
- 위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또는 불기소간주)에 불복하여 헌법권징조례 제72조 1항에 의거 재항고합니다.

년 월 일

재항고인 $(고소인 \cdot 고발인) \bigcirc \bigcirc \bigcirc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원회 경유·기소위원장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1호 서식 : 기소장

기 소 장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기소사실:

범행일시: 년 월 일 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사건의 특정화:

적용규정:

위의 피고인을 상기의 죄과로 기소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인)

기소위원회 서 기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2호 서식 : 기소통지서

기소 통지서

고소인(고발인) : ○○○ 나이 : 성별 : 직분 :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 : ○○○ 나이 : 성별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기소일자 : 년 월 일

첨부: 기소장 사본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소함을 헌법 권징조례 제70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인) 서 기 ○○○(인)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징 제7-3호 서식 : 권징시벌 피고용 답변서

답 변 서

사건번호:

사건명:

고소인(고발인) : ○○○ 나이 : 성별 : 직분 :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54 제○항 ○○○○행위

답변 취지:

답변 내용 :

기소사실:

고소원인사실에 대한 답변:

증거 방법

- 1. 서증
- 2. 물증
- 3. 인증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피고인은 답변합니다.

년 월 일

피고인 :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4호 서식 : 답변서(행정소송 피고인)

답변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서증
- 2. 물증
- 3. 인증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피고는 답변합니다.

년 월 일

피고인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특별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5호 서식 : 권징시벌 준비서면 기소위원회

준비서면

사건번호:	
사 건 명 :	
고소인(고발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 직분:
주 소 :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	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준비내용	
1.	
2.	
3.	
입증방법	
1.	
2.	
3.	
A 1-1 1 1-1 1 1 1 1 -1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기소위원회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인)

기소위원회서기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6호 서식 : 행정소송 원고준비서면

2.3.

준비서면

사건	번호	•					
사 7	선 명	:					
원	卫	•					
	0]	름:	000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ه	름:	000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행정	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 결의취소 등	들의 소송, ㅊ]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	준비니	용					
1.							
2.							
3.							
.17							
	방법						
1.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원고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년 월 일

원고: ○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특별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7호 서식 : 기소변경허가 신청

기소변경허가 신청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고 소 인(고발인) : ○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피 고 인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ኔ:	
기소장 죄과 명: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000	○행위
기소장 기소사실요지 :			
1.			
2.			
3.			
기소장 적용규정 :			
기소장 변경내용 :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추가내용	<u> </u>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철회내용)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변경내용)			

위와 같이 기소장의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을 헌법권징조례 제85조에 제1항에 의거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 ○ ○(인) 서 기: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8호 서식 : 기소취소

기소 취소서

사건번호:						
사 건 명	:					
고 소 인(고발인) :					
0]	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	소:			전화번호 :		
피고인	:					
0]	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	소:			전화번호 :		
죄 과 명	: 헌법 권징 제4조	제()항 ()()()	행위			
기소일자	: 년 월	일				
기소취소 이유:						

위의 사건에 관한 기소를 헌법권징조례 제68조에 의하여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기소위원회 위원장 ○ ○ (인) 서 기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권징 제7-9호 서식 : 기소취소 통지

기소 취소 통지서

사건번호:

사건명:

고 소 인(고발인) :

이 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인(피고발인):

이 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 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기소일자: 년 월 일

기소취소일자: 년 월 일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 취소함을 헌법 권징 제70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 ○ ○(인)

서 기 () (인)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징 제8-1호 서식 : 권징시벌 판결문

파 결 문

사건번호:

사건명:

고 소 인(고발인)

이 름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론종결일: 년 월 일 판결선고일: 년 월 일

주 문

헌법권징조례 제 ○○조에 의하여 판결이유

- 1. 죄과될 사실
- 2. 증거의 요지
-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

재판국장 ○○○(인)

재판국서기 ○○○(인)

재판국원 ○○○(인)

※유의사항: 항소재판국 또는 상고재판국의 판결문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기소위원회의 난에 괄호를 하여 항소인과 피항소인 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당사자와 함께 병기를 한다. 권징 제8-2호 서식 : 행정소송 판결문

판결문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치리회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종결일 : 년 월 일 판결선고일 : 년 월 일

주 문

헌법권징조례 제 ()()조에 의하여

청구취지:

판결이유 :

- 1. 기초사실
- 2. 증거의 요지
-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

재판국장 ○○○(인)

재판국서기 ○○○(인)

재판국원 ○○○(인)

※유의사항 : 행정소송사건 중 행정소송의 상고재판국(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난에 괄호를 하여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당사자와

함께 병기한다.

권징 제8-3호 서식 : 권징시벌 및 재심 결정문

결 정 문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결정고지일: 년 월 일

주 문

헌법권조 제 ○○조에 의하여

신청(청구)취지:

결정이유:

위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

재판국장 ○○○(인)

재판국서기 ○○○(인)

재판국원 ○○○(인)

재판국원 ○○○(인)

권징 제8-4호 서식 : 결정문(행정소송)

결정문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정고지일: 년 월 일

주 문

헌법권징조례 제 ()()조에 의하여

청구취지: 결정이유:

위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판국장 ○○○(인)

재판국서기 ○○○(인)

재판국원 ○○○(인)

재판국원 ○○○(인)

※유의사항: 치리회가 다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권징 제8-5호 서식 : 판결집행문

판결집행문

사건번호: 사건명:

피 고 인 : 성 명 : ○○○, 피고 ○○치리회장 ○○○

피 고 ○○선거관리위원장 ○○○

소속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〇〇노회 〇〇교회

직 분: 파결주문:

판결확정일: 년 월 일

판결확정재판국: ○○당회 재판국(○○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

판결집행일: 무기책벌: 년 월 일부터

유기책벌:

시기: 년 월 일부터 종기: 년 월 일까지

행정소송: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132조에 의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소속치리회장이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공시하고 또는 지상공고하여 시벌하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52조 3항). 기간은 15일이내이다(헌법 권징조례152조 3항).
 - 2.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 중 시벌할 수 있다(헌법 권징조례 153조)

※유의사항: 유기책벌의 경우 시기(始期)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판결 송달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 판결확정일이며 상소포기·취하한 때에는 포기·취하한 날이 판결확정일이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일이 판결확정일이다. ○○치리회장 ○○○(인)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를 말한다. 총회 산하 기관 임,직원일 때는 해 기관장에게도 보낸다. 성명 난에 권징시벌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 000의 난만을, 행정소원,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 ○○○ 치리회장 ○○○의 난만을,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피고 ○○○ 선거관리위원장 ○○○의 난만을 기입한다

권징 제8-6호 서식 : 판결집행 보고서

판결집행 보고서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 름 :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판결선고일: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헌법권징조례 제132조에 의하여 판결집행을 년 월 일 시행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 아 래 -

- 1. 판결집행자 : 년 월 일
- 2. 피고인의 수용여부 :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〇〇

회장 ○○○ (인)

서기 ○○○ (인)

[기관 : 장 ○○○ (인)]

※유의사항: 목사는 소속 노회장에게 장로와 교인은 해 당회장에게 기관 임직원은 해기관장에게 통보 한다. 권징 제8-7호 서식 : 가중시벌청원서

가중시벌 청원서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판결선고일: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헌법 권징조례 제132조에 의하여 판결집행을 년 월 일 시행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제153조에 가중시벌을 청원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노회

회장 ○○○ (인)

서기 ○○○ (인)

기관 : 장 ○○○ (인)

※유의사항 : 목사는 소속 노회장에게 장로와 교인은 해 당회장에게 기관 임직원은 해기관장에게 통보 한다. 권징 제9-1호 서식 : 항소장(상고장)

항소(상고)장

사건번호:

사건명:

항소인(상고인):

권징시벌용 :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 전화번호 :

행정소송용: (원고 또는 피고)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 전화번호 :

피항소인(피상고인): (위 상대방 당사자)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심판결 송달 수령일 : 년 월 일

첨부 1.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 2. 항소(상고)장 부본

원심판결의 표시

- 1. 주문
- 2. 판결선고일: 년 월 일

항소(상고)취지

항소(상고)이유

* 추후 항소(상고)이유서 제출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항소(상고)를 헌법 권징조례 제105조, 제107조에 의거하여 제기합니다.

년 월 일

항소인(상고인)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항소(상고)장은 원심재판국에 제출한다.

권징 제9-2호 서식 : 항소(상고) 취하(초기)

항소(상고)취하(초기)서

사건번호:

사건명:

항소인(상고인):

권징시벌용 : 피고인, 기소위원장 또는 고소인(고발인)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용: (원고 또는 피고) ○○○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

피항소인(피상고인): (위의 상대방 당사자)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심판결의 표시 :

원심판결의 선고일: 년 월 일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상고인)은 항소(상고)를 전부 취하(포기)합니다.

년 월 일

상고인(항소인) : ○○○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 취하는 항소(상고)재판국에,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제출한다.

권징 제9-3호 서식 : 항소(상고)이유서

항소(상고)이유서

사건번호:

사건명:

항소인(상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항소인(피상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원심판결 선고일: 년 월 일

원심판결 송달받은 날 : 년 월 일

항소(상고)한 날 : 년 월 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첚 부: 항소(상고) 이유서 부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기소위원장) 또는 고소인(고발인) 또는 원고(피고)·항소인(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 항소(상고) 이유
 - 1.
 - 2.
 - 3.

년 월 일 이유서 제출자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유의사항:

항소(상고)장에 항소(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인(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상고)이유서를 항소(상고) 재판국에 재출하여야하고, 만약 위의 기간 안에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권징 제9-4호 서식 : 답변서(항소, 상고용)

답 변 서

(항소, 상고용)

사건번호:

사건명:

항소인(상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항소인(피상고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항소(상고)이유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

첨부: 답변서 부본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기소위원장) 또는 고소인(고발인) 또는 원고(피고)·피항소인 (피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상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 취지:

답변 이유:

- 1.
- 2.
- 3.

년 월 일

답변서 작성자 :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장 귀하

※참고사항: 답변서 제출자가 마지막 서면 날인 하면 됩니다. 피고인(기소위원장), 고소인(고발인), 원고(피고), 피항소인(피상고인) 등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세요. 권징 제10-1호 서식 : 위탁판결청원서

위탁판결청원서

고소인(고발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기소장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위탁판결 청원사유 : 헌법 권징조례 제133조 제○항 ○○○○의 경우

첨 부

- 1. 재판비용 예납금액 송금 또는 납부확인증의 사본
- 2. 고소(고발)장 사본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사유로 위탁재판을 청원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 ○○○ 목사(인) 당회서기 ○○○ 장로(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장 귀하

※유의사항: 노회에서 총회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시는 치리회명만 바꾸면 됩니다.

권징 제10-2호 서식 : 재심(특별재심)청구 청원서

재심(특별재심)청구 청원서

고소인(고발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이 름: 나이: 성별: 직분:

주 소: 전화번호:

기소장 죄과 명 : 헌법 권징조례 제4조 제○항 ○○○○행위

위탁판결 청원사유 : 헌법 권징조례 제133조 제○항 ○○○○의 경우

첨 부

- 1. 재판비용 예납금액 송금 또는 납부확인증의 사본
- 2. 판결문 사본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사유와 같이 재심을 청원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 ○○○ 목사 (인) 당회서기 ○○○ 장로 (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노회장 귀하

※유의사항: 노회에서 총회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시는 치리회명만 바꾸면 됩니다.

규정집 출판 후기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교단의 규정집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따라서 바른 교단을 세우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총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을 하나 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비생산적인 논쟁과 시비를 접고 법에 따라 순응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신사적이고 차원 높은 총회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집은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침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규모 있는 교단, 질서 있는 총회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규정 제1집] 출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활용도가 매우 높은 규정집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년 6 월 10 일 출판국장 박 형 진 목사

규 정(제1집)

2020년 6월10일 개정판 발행

발 행: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73-4 TEL 02)742-3538

출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총회 출판국)

출판국장: 박형진목사 편 집: 박만진목사

정 가: 값5,000원



바른신학 · 바른교회 · 바른생활